

2015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예산안 개요

- 복지건강실 소관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 세입예산은 총 2조 8,915억 6천 8백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2조 4,109억 7천 8백만원 보다 4,805억 9천만원을 증액(19.9%) 편성함.

〈 2015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안)	2014예산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2,891,568	2,410,978	480,590	19.93%
일 반 회 계	2,038,668	1,584,278	454,390	28.68%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852,900	826,700	26,200	3.16%

2) 세출예산

- 복지건강실 소관 2015년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조 326억 7천 7백만원으로 2014년 최종예산 4조 2,772억 1천 8백만원보다 7,554억 5천 9백만원이 증액(17.7%) 편성됨.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757억 7천 7백만원은 2014년 3조 4,463억 1천 9백만원 보다 3,727억 1천 5백만원(21.2%)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69억원으로 2014년 8,309억원에 비해 260억원(3.1%) 증액 되었음.

〈 2015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안	2014예산(최종)	증·감	
			증감액	비율
계	5,032,677	4,277,218	755,459	17.7%
일 반 회 계	4,175,777	3,446,319	729,458	21.2%
특 별 회 계	856,900	830,899	26,001	3.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2,900	826,700	26,200	3.2%
도시개발 특별회계	4,000	4,199	△199	△4.7%

-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 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가 있음.
- 이들 기금의 2015년도 운용규모는 1,733억 7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1,487억 3백만원에 비해 246억 7천 3백만원 (16.6%)이 증가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합 계	148,703	173,376	24,673	16.6%
식 품 진 흥 기 금	11,477	9,032	△2,445	△21.3%
사 회 복 지 기 금	10,557	11,498	941	8.9%
노 인 복 지 계 정	1,533	2,051	518	33.8%
장 애 인 복 지 계 정	7,538	7,333	△205	△2.7%
자 활 계 정	1,486	2,114	628	42.3%
재 난 관 리 기 금 (구 호 계 정)	126,669	152,846	26,177	20.7%

- 식품진흥기금은 비용자성 사업비(606백만원)와 예치금 (1,518백만원)에서 증가하였으나, 예탁금(△3,500백만원) 및 기본경비 (△1,069백만원)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2,445백만원 (△21.3%)이 감액됨.
- 사회복지기금의 증감내역은
 - 노인복지계정은 비용자성 사업비(△144백만원) 및 기본경비 (△10백만원)가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증가(672백만원)로 전년 대비 총 518백만원(8.9%) 증액 되었음.

-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이 증가(419백만원)하였으나, 비용자성 사업비 등이 감액(△625백만원)되어 전년 대비 총 206백만원 (△2.7%) 감액 되었음.

- 자활계정은 비용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가 감액(△113백만원) 되었으나 예치금(740백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총 627백만원 (42.2%)이 증액 되었음.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예탁금(26,300백만원) 및 비용자성 사업비(9백만원)가 증가되었으나, 기본경비(△21백만원) 및 예치금 (△112백만원)이 감액 되어 전년대비 총 26,176백만원(20.7%)이 증액 편성됨.

(1) 세입 예산

- 복지건강실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5.6%, 2013년 15.6%, 2014년 16.7%, 2015년 19.7%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복지건강실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2014년 11.6%, 2015년 23.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본예산)	복지건강실 예산(본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 대비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2	217,829	33,894	15.6%	1.5%
2013	235,069	36,570	15.6%	7.9%
2014	244,133	40,801	16.7%	11.6%
2015	255,555	50,326	19.7%	23.3%

〈2015년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감	2014년대 비 증감률
계	1,638,328,271	1,987,116,657	2,504,704,570	517,587,913	26.2%
200세외수입	75,691,871	76,349,137	75,035,556	△1,313,581	2.3%
210경상적세외수입	45,923,890	45,468,559	46,775,009	1,306,450	3.9%
211재산임대수입	1,095,198	1,123,271	1,157,397	34,126	3.04%
21102공유재산임대료	1,095,198	1,123,271	1,157,397	34,126	3.04%
212사용료수입	440,862	479,589	415,220	△64,369	△13.4%
21208기타사용료	440,862	479,589	415,220	△64,369	△13.4%
213수수료수입	905,395	805,699	683,741	△121,958	△15.1%
21301증지수입	905,395	805,699	683,741	△121,958	△15.1%
214사업수입	43,479,287	43,049,800	44,496,551	1,446,751	4.1%
21408의료사업수입	31,415,587	31,104,105	32,878,270	1,774,165	5.7%
21409기타사업수입	12,063,700	11,945,695	11,618,281	△327,414	△2.7%
215징수교부금수입	3,148	10,200	22,100	11,900	116.7%
21501징수교부금수입	3,148	10,200	22,100	11,900	116.7%
220임시적세외수입	29,767,981	30,880,578	28,260,547	△2,620,031	0.0%
223과징금및과태료등	30,642	102,769	60,400	△42,369	△46.4%
22303과태료	30,642	102,769	60,400	△42,369	△46.4%
224기타수입	29,531,561	30,195,913	27,844,033	△2,351,880	0.0%
22401불용품매각대	3,935	3,990	18,075	14,085	353.0%
22404시도비반환금수 입	19,836,481	13,816,516	12,835,408	△981,108	△7.1%
22405기부금	-	7,000,000	6,000,000	△1,000,000	△14.3%
22406그외수입	9,691,145	9,375,407	8,990,550	△384,857	1.5%
225지난연도수입	205,778	581,896	356,114	△225,782	△38.8%
22501지난연도수입	205,778	581,896	356,114	△225,782	△38.8%
500보조금	1,562,636,400	1,910,767,520	2,429,669,014	518,901,494	27.2%
510국고보조금등	1,562,636,400	1,910,767,520	2,429,669,014	518,901,494	27.2%

-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29억원으로 2014년의 8,267억원에 비해 262억원을 증액(3.2%) 편성됨.

〈 2015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내 역	비 고
특별회계 세입 (계)	852,900	826,700	26,200	3.2%		
전 입 금	425,442	408,225	17,217	4.2%	• 일반회계 전입금	• 15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
기타 수입	2,015	10,249	△8,234	△80.3%	• 과징금 및 이자수입 계상	
국고보조금	425,443	408,226	17,217	4.2%	• 국고보조금	

(2) 세출 예산

- 복지건강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1,757억7천7백만 원으로 2014년 3조4,463억1천9백만 원에 비해 21.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함.

〈 표 〉 2015년 복지건강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2014년 대비 증감	증감률
소계	5,032,677,188	4,277,218,638	755,458,550	17.7%
일반회계	4,175,777,188	3,446,319,638	729,457,550	21.2%
특별회계	856,900,000	830,899,000	26,001,000	3.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2,900,000	826,700,000	26,200,000	3.2%
도시개발 특별회계	4,000,000	4,199,000	△199,000	△4.7%

- 복지건강실 2015년 전략목표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을 대비해 보면, ‘생활보건 관리 향상’가 61%,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해소’가 46% 증가하는 등 일부 전략목표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2015년 전략목표별 201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백만원)

전략목표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계	3,689,078	3,844,834	4,581,322	892,246	24.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1,579,347	1,672,824	1,861,616	282,269	17.9%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해소	20,597	25,126	30,105	9,508	46.2%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131,807	1,174,432	1,581,916	450,109	39.8%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156,745	156,748	176,516	19,771	12.6%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382,238	383,025	466,352	84,114	22.0%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43,576	43,754	42,624	△952	△2.2%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83,539	83,604	67,240	△16,299	△19.5%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115,798	116,033	134,639	18,841	16.3%
시민건강수준 향상	71,512	68,914	77,816	6,304	8.8%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5,818	5,862	8,121	2,304	39.6%
생활보건 관리 향상	60,449	77,613	97,322	36,873	61.0%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1,820	1,830	2,089	269	14.8%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11,768	11,865	12,739	971	8.3%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15,150	14,150	14,253	△896	△5.9%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8,914	9,054	7,974	△940	△10.5%

II. 복지정책분야 검토의견

1.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구 중심’ 복지 예산 :

절차적 공론화 과정 생략 문제

- <쟁점> ① 특정 계층(베이비부머)을 염두에 둔 재단, 연구소, 캠퍼스 등의 설치 예산편성의 적정성
- ② 50+재단의 설립과정에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며, 급박하게 설치하려는 이유,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의 중복성 여부
- ③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정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

☞ 2015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 223쪽, 212쪽, 263쪽, 78쪽

(1) 50+ 재단 설립운영 (사업별 설명서 223쪽)

- 편성 : 동 사업은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책·연구 기능을 총괄할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15년 신규로 10억원이 편성됨.
- 특징 :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10년간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지건강실 산하에 ‘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은 중복 가능성과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음.
- 문제점 및 분석 :
 - ① 절차적 문제점

-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공청회나 의회에 대해 사전설명 절차, 시민욕구조사는 물론 연구용역조치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재단설립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재단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 용역이 “(가칭)50+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3개월(2014. 11 ~ 2015. 2)에 걸쳐 짧은 기간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¹⁾에 의한 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나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등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는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 된 것으로 파악되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

1)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시복지재단’이 10년전에 설치된 과정과 ‘(가칭) 50+재단’의 현재 설립과정을 비교해 보면, 금번 재단 설립과정상의 문제는 상당함. 예를 들면 서울시복지재단은 설립이전에 ‘설립 발기인 총회’를 이미 마쳤고, 재단이 설립되기 3개월전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2003.9.25.]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반면에, ‘(가칭)50+ 재단’은 발기인 총회나 관련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표〉 (가칭) 50+재단과 서울시복지재단의 설립과정 비교

구분	50+ 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설립일(예정일)	‘15.9	‘03.12.31
조례(안) 제정 연월일	조례 없음 (준비중)	‘03.9.2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	장년층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지역복지, 공공협력 및 복지법률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원
목적	장년층 관련 싱크탱크, 지원 전담기구	서울시 복지 정책 개발 및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업무내용	▶장년층 정책 연구 개발 ▶장년층 인프라 운영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장년층 인프라 홍보·활성화	●지역사회 복지생태계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정책 개발 및 협력
설립 발기인 총회	미정	‘03.10
설립계획 수립(방침 제목)	수립예정	(재)서울복지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안)(시장방침 제675호 2003.9.23.)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예정	-
출연금 총액	미정	11,500백만원(기본재산)
설립당시 인원	미정	31명
시설(건물)	미정	종로구 송월동 52

〈표〉 재단설립 관련 학술용역 내역 비교

구분	(가칭) 50+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목적	○ (가칭)50+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최적화된 방안 마련	○ 용역명 : 서울복지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및 구성방안 마련 ○ 용역기간 :
연구개요	○ 과 업 명 : (가칭)50+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 과업기간 : 2014. 11 ~ 2015. 2(3개월)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 ○ 용역비 : 46,000천원	2003.2.3~4.30 ○ 용역기관 : 시정개발연구원(현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복지시설 지원업무 현황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 서울복지재단 설립 필요성과 의의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표〉 추진 절차상의 미비점

용역 결과 없음 (행안부 협의안됨)	⇒	준비절차 미흡	⇒	조례제정 안됨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중 •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안됨 • 안행부 설립 협의 안됨		• 재단설립에 대한 출 연금 규모와 인적구 성 내용 계획 미정		• (가칭)서울시 5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선행 필요

② 유사 중복 가능성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매년 출연금을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있음.
-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9조2)에 따라 관련 기관인 ‘노인정책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시 노인정책센터’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어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여 운영(현재는 서울복지재단의 팀으로 운영, 5명)하도록 되어 있어, 또다시 재단이 설치된 된다면 중복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임.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노인정책센터 기능 관련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조례」 조항

(제5조) 5년마다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제6조) 제5조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8조) 2년마다 1회이상 노인건강실태조사 실시

(제9조) 노인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 노인복지옴부즈만 구성·운영

(제23~24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제25조) 고령화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제26조) 고령사회 관련 국제기구 회원가입, 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8조) 고령사회 대비 전문인력의 양성

③ 정책 대안 및 분석

-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인프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재단의 설립보다는 현재의 재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시 노인정책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됨.

-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0조³⁾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3)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건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 노인정책센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결여한 것임.

(2) 인생이모작 위원회 및 50+ 연구소 운영 (사업별 설명서 212쪽)

- 편성 : 동 사업은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및 노인층 진입으로 당사자 시민 참여로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적 고령화 정책 연구 기관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자는 측면에서, 2015년에 신규로 1억8천7백만원이 편성됨.
- 특징 : ‘인생이모작 위원회 및 50+ 연구소’는 이미 우리시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정책센터 등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위원회를 시장방침(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17호, 2014.04.22.)으로 설치하려는 것은 위원회 난립과 운영의 난맥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문제점 및 분석 :

① 유사 중복 가능성

<개정 2011.12.29.>

-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 ‘인생이모작 위원회 및 50+ 연구소’는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기능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
- 특히 신규로 설치하려는 <50+ 재단 설립>과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기구라는 점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중복되어, 결국 이러한 기구 설치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표〉 50+재단, 50+연구소, 50+캠퍼스 등 세 기관의 비교

구분	50+ 재단 설립	50+ 연구소	50+ 캠퍼스
목적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생이모작 지원 전담기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	서울시 장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광역 거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인프라 운영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장년층 대상 인프라 홍보·활성화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연구, 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고용+복지+학습 통합 서비스 제공(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체육, 커뮤니티 등)
기능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적 고령화 정책 연구 기관으로, 현장 중심 정책 구현 기반 구축	장년층 인생이모작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 시설
근거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8219호, 시장방침 제 1 1 7 호, 2014.04.22.)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시장방침 117호(14.4.22))
사업 대상	장년층 이상	장년층 이상	장년층 이상
예산액	3,000백만원	182,500천원	79,000백만원
서울시복지재단과의	기존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어르신 정책과	장년층에 특화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서울시복지재단은 장년층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차이점	는 다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 입안·실행 기구임	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음)	운영과 재취업·창업·사회봉사 등 사회참여 확대 지원 기관임
2015년 예산(단위: 천원)	100,000	182,500	4,199,000
공통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전담기구		
차이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운영 지원	장년층 대상 전문 연구 조사 및 정책 개발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사회공헌 등 사업 추진

②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결여

- 〈50+재단〉 및 〈50+연구소〉는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 노인정책센터’ 등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음.

(3)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사업별 설명서 78쪽)

- 편성 : 동 사업은 마포 산업인력공단(지방 이전기관) 별관동을 50+캠퍼스 및 복지타운으로 개보수하여 운영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인생이모작 기반 조성 및 복지관련 단체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신규로 69억9천2백만원이 편성됨.

〈참고〉 건축개요 (산업인력공단 별관동 활용)

- 사업명 :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사업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1,027.34㎡
- 공사종류 : 리모델링(개보수, 건설기술전문가 자문내용 반영)
- 사업기간 : '14. 7월 ~ '16. 4월
- 사업비 : 15,695백만원

○ 특징 및 문제점

① 특정 세대(베이비붐 세대)만을 위한 공간 설치

- 서울에 146만명(2013년말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거주하며, 이들은 전체의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전문대 이상 24.8%)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 평균 은퇴연령이 만 52.6세로, 노후에 대한 정보·교육 부족, 사회공헌 활동 기회부족 등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 됨.
- 다만 서울시 복지정책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대(베이비붐 세대)만을 위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로 변모되어야 함.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실천되도록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더구나 서북권(마포)과 서남권(구로) ‘50+캠퍼스’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에 있어, 한번 설치되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표〉 서북권(마포)과 서남권(구로) '50+캠퍼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13	'14	'15	'16	'17	'18
총 계	33,173	800	4,554	7,463	17,876	2,480	
서북권(마포)	7,773	-	355	3,463	3,955	-	-
서남권(구로)	25,400	800	4,199	4,000	13,921	2,480	-

※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 : 1단계(서북, 서남) 사업성과 분석 후 추진

※ '18년 예산 : 2단계 사업 설계비

② 주민욕구조사를 배제한 유관기관과의 밀착 가능성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한곳에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이익을 추구하는 '협회'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협회'등 이익단체와 긴밀히 밀착되고, 주민들을 배제하고 '협회'와의 협의만을 통해서 공간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음
향후 입주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 등 건물관리에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임.

③ 절차적 합리성 점검

- 「50+캠퍼스」를 권역별로 총 5개소 (시립으로 연차별 단계별 확충)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표〉 「50+캠퍼스」를 권역별로 총 5개소

단계 구분		위 치	공 종	건 축 규 모	사업비 (억원)	건설기 간
1단계 (15~17년)	서북권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별관동	리모델링	- 연면적 : 5,461㎡ - 층 수 : 지하1 지상4	116	'14.7~ '16.2
	서남권 (구로구)	오류동 천왕2지구 사회시설부지	신 축	- 연면적 : 5,000㎡ - 층 수 : 지하1 지상4	254	'13.8~ '16.12
2단계 (1단계 사업평가 후 18년~20년)	동북, 도심, 동남 ▶ 공공청사 이전부지(리모델링), 유희시유지(신축) 활용 추진 ▶ 시설규모 : 건립면적 5,000㎡ 내외 ※ 운영비 15~22억원 소요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동 주민센터 허브화’사업도 베이비부머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니어 관리사’, ‘시니어 직업상담사’, ‘시니어 금융복지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특정 계층(베이비부머세대)으로 치중된 복지정책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표〉 ‘동 마을복지센터’에 배치될 ‘시니어 사례관리사’등의 배치 활용

구 분		내 용
배치 및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마을복지센터 당 사업군별 1명이상 배치 ▶ 시(市)의 종합계획에 따라 채용 및 관리운영은 자치구에서, 교육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실시
특정계층(베이비붐 세대) 관련 지원	시니어 사례관리사	- 동 단위 사례관리활동 지원 및 지역자원 개발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시니어 직업상담사	- 지역 내 구인·구직정보 개발 및 정보제공, 고용센터 및 일자리플러스·취업정보센터 연계
	시니어 금융복지상담사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상담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또는 공익법센터 연계, 지원

④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 파악 필요

-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여러 세대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 문제임. 우리시에서도 베이비부머를 비롯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도 강조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 188개이며, 사업수는 691개로 조사되고 있음(2012년 말 현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세대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인생이모작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시설확충 보다는 실속있는 일

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0+캠퍼스’가 ‘인생이모작센터’와 함께 최소한의 운영인력으로 베
이비부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서울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단위 : 개)

구분	계	자치구	노인종합 복지관	시니어 클럽	인생이 모작센 터	종합사회 복지관	대 한 노인회	소규모 노인복지센 터	기타
수행 기관수	190	20	31	5	2	54	25	25	28
사업수	691	63	210	36		161	98	62	61

⑤ 복지타운의 입주 단체의 적절성 점검

- 복지타운의 입주와 관련하여 단체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회의 예산규모나 회원수, 입주의 필요성 등이 면밀히 검토
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회 등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
여 입주면적이 조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사용면적 등이 적절했는지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복지타운의 층별 배치계획

구 분	면적(m ²)	사용기관(용도)	비 고 (세부내용)
지상 10층	3,200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사무실 및 각종 상담센터 배치
지상 9층			
지상 8층			
지상 7층	1,967	사회복지협의회 및 11개 직능단체	사회복지관협회, 아동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협 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 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노숙인시설협회
지상 6층			
지상 5층			
	400	2개 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시지부
지상 4층	5,461	50+ 캠퍼스 1층일부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50+ 캠퍼스 주요시설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 50+ 캠퍼스 시설안 기재)
지상 3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표〉 복지타운 연면적 기준과 입주단체별 사용 면적

단체명	현재 사용면적	조정면적	공론화 과정 및 특징
계	10,141	11,028	
50+ 캠퍼스	5,461	5,461	공론화 과정 없었음.
서울시복지재단	3,008	3,200	
사회복지협의회	799	1,135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푸드뱅크 등 서울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 중임.
서울시 사회복 지 직능협	소 계	473	832
	사회복지관협회	79	66
	아동복지협회	43	99
	재가노인복지협회	25	49

회(12개)	장애인복지관협회	-	49	
	장애인복지시설협회	155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40	
	노인복지협회	-	50	
	노인종합복지관협회	33	66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79	50	
	사회복지시설협회	-	33	
	노숙인시설협회	33	33	
	지역자활센터협회	26	66	
보훈단체(2)		400	400	

(4) 서남권 50+ 캠퍼스 조성(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서 263쪽)

- 편성 :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체육, 커뮤니티 등” 광역적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대비 4.7%가 감소된 40억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4,199	4,000	△199	△4.7%

- 특징 :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의 인생이모작 기반 조성을 위해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확대(복합기능 :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체육, 커뮤니티 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노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문제점 및 분석

① 지역밀착형 시설 여부

- 동 사업은 2013년 우리시의회 예산(2012년12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지역밀착형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조정토록 의결함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대지면적 $6,600m^2 \rightarrow 3,300m^2$, 연면적 $10,350m^2 \rightarrow 5,000m^2$)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고등학교 \rightarrow 사회복지시설, '13.5.21)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13.7.1)도 원안 통과 되어 추진되었음.

그리고 종전 사업명은 '구로구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에서 '서남권 50+ 캠퍼스 조성'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음. 지역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캠퍼스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② 시범운영 없이 5개소 설치 예정

- <50+ 캠퍼스>는 시설의 특성상 여러 실국⁴⁾에 걸쳐 진행되므로, 실국간의 협조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4) 시설의 특성상 우리시 3개 실국으로 나누어 사업과 운영이 진행될 예정임. 즉 복지건강실(건립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및 예산확보), 도시기반시설본부(설계 및 공사 발주), 여성가족정책실(공공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로 나누어져 있어, 복지건강실은 정책부서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책임을 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센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시설유형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0+ 캠퍼스 '18년까지 총 5개소 조성

(민선6기 공약) 〉

- ◆ '16년 2개소 우선 설치 : 서북(마포), 서남(구로, 설계용역 진행중)
- ◆ '18년까지 3개소 추가 설치 : 17년(도심권), '18년(동남권, 동북권)

(5) 분석 및 소결

○ 서울시 복지정책이 '기구 설치'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50+ 재단>, <50+연구소>, <50+캠퍼스>, <인생이모작 위원회>가 특정 계층만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50+ 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사전이행 절차가 미비된 상태이며,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음.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

- 관심대상 : 생활보장 중심 복지분야 → 보건·경제활동·사회참여 등 전 분야
- 기본지향 : 최저한의 기본적 욕구 해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ctive Aging
- 대상연령 : 65세 이상 노인 →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포함
- 대상특성 : 사회취약계층 저소득 노인 →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시민
- 관점변화 : 단기적 실행계획 위주(reactive) → 중장기적 정책수립 노력(proactive)
- 전달체계 : 개인위주·개별적·공급자 중심 → 가족위주·통합적·수요자 중심
- 협력대상 : 국내 및 서울시 한정 → 국제적 변화 흐름 동참 및 선도 노력

- 또한 서울시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현행 ‘생활보장 중심 복지분야’에서 ‘보건·경제활동·사회참여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저소득 노인’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나 복지타운의 건물 입주 현황을 보면 ‘보건 및 경제·고용분야’가 제외되고 있음. 향후 고용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대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만을 위한 시설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균형성을 잃고 있음. 2015년 신규로 신설될 ‘베이비부머세대 시설’에만 81억7천9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고 이후에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표〉 2015년 신규 신설될 베이비부머세대 시설

(단위 : 천원)

사업명	개요	2015년 예산
50+ 재단 설립운영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51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50+시니어 관련 신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000,000
서북권 50+캠퍼스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37조	6,992,075

사업명	개요	2015년 예산
및 복지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마포구 공덕동(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 사업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을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개보수) 	
인생이모작 위원회 및 50+ 연구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9조(노인 정책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월) ○ 지원대상 : 만51-64세 퇴직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서울시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자문,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보완 사업 및 정책 아이디어 민간자원 활용 베이비부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7,000
계		8,179,075

2. '사람 중심' 복지 예산 :

저소득시민복지의 적절성 점검

- <쟁점> ① 서울시장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을 보면 '사람'중심이 아닌, '시설과 정책' 중심으로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지 검토.
 ->저소득층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긴급복지 사업편성, 국제학술대회 등)
- ②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이 점차 그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청년두배통장)이 추가되고 있어, 그 타당성을 검토
- ③ 저소득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부의 여러 팀이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항목분리가 필요한 사업....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점검필요

☞ 2015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 38쪽, 112쪽, 118쪽, 586쪽
 - 편성예산, 특징,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검토유의사항 순으로 서술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별 설명서 38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4.8%가 감소된 129억6천2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B-A)	(B-A)*100/A
13,620,280	12,962,163	△ 658,117	△ 4.8%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최저생계비 80%이하 가정에 대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을 함.

- 특징 : ① 제도의 사업시행 초기 수요예측 부족으로 지속적인 목표치의 수정이 제기되어 정책의 혼선을 가져 왔음. ②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혜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시민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③ 송파구세모녀사건 이후 긴급대책 이후 오히려 발굴실적이 저조하는 등 관련 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굴의 난맥상을 보임.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변화(맞춤형)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함.

- 사업의 문제점 및 분석
 -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 ① 사업효과의 미지수
 - 사업실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전히 증가-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적인 경향은 2010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비하여, 서울은 1.3%와 1.4%가 각각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실시 이후에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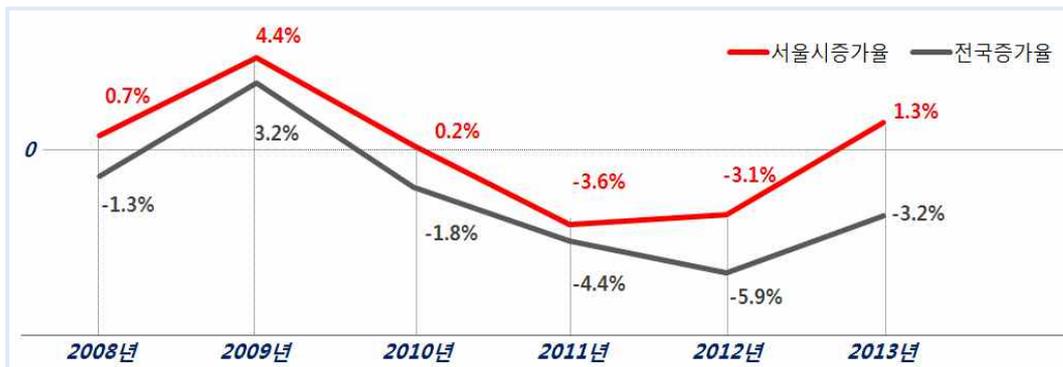
속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발굴실적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 추이(서울시와 전국의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수급자 인원	증감								
서울시	214,602	0.2	206,880	△3.6	200,371	△3.1	202,991	1.3	205,878	1.42
전 국	1,549,820	△1.8	1,482,000	△4.4	1,395,103	△5.9	1,350,891	△3.2	1,343,311	△0.56

※ 전국은 '10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서울은 2013년부터 증가 추세

〈그림〉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교



②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속적인 난맥상

- 동 사업에 대한 작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 편성이후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져야 예산 전용을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11억원을 전용하는 등 5회에 걸쳐 전용하였고, 또한 전용후에도 예산의 46.5%가 불용(불용액 51억8천3백만원)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예산변경 내역(2013년)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세부사업	승인일자	금액	
				감액	증액
1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06.03	531,75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531,751
2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09.09	86,002	
		정부양곡할인지원			86,002
3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11.14	1,111,573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			1,111,573
4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12.10	686,37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86,375
5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12.10	4,112,98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112,983
6	변경 사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3.06.03	1,910,30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910,305

- 동 제도가 실시된 이후, 1년 이내에서 2차례(2014년 1월 및 4월)에 걸친 제도 기준자체가 완화⁵⁾되었는 바, 이는 당초 서울시에 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검토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인 듯 보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동 제도 실시 이후,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차원의 대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5백만원→10백만원('13.10월)
- 소득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60%→최저생계비 68%('14.1월)
- 소득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68%→최저생계비 80%('14.4월)

책과 함께 특히 서울시에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⁶⁾하여 기초수급자 선정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 희망온돌 연계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진함.

오히려 긴급대책 발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동일한 기간 동안 6,355명에서 2,827명으로 그 숫자가 대폭 감소하였음.

6) 서울시는 2014년 3월 12일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대책'(아래 긴급대책)을 발표함.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외에 별도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희망온돌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라면서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바라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세 모녀' 사건의 발생 원인이 '취약한 복지전달체계', '신청주의의 한계', '엄격한 선정기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청주의' 의 문제를 '적극적 발굴주의' 로 극복하겠다고, 행정1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 를 설치하는 한편, 위기가정 발굴 전문인력 26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활동도 병행한다.

〈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기별 발굴 실적 및 2015년 계획

(단위 : 명)

구분	기간	특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순수발굴인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내용
2014년 목표치	2014년 예산상의 목표치 (연인원)		당초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수정	
현재까지의 달성치 (2014.11.1.현재)	2014.11.1.현재 총인원 (누계)		<u>9,182</u>	<u>208,745</u>
기간별 월평균 실적	2013.7.1.~2013.12.31.까지의 기간동안의 발굴 실적(월평균)		943	2,213
	2014.1.1.~2014.6.30.까지의 기간동안의 발굴 실적 (월평균)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일부완화	266	2,324
	2014.7.1.~2014.10.30.까지의 기간동안의 발굴 실적(월평균)		481	2,085
긴급대책 기자설명회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대책) 전후의 비교	2013.7.1.부터~2014.3.12.까지의 기간동안 발굴한 누계 실적	긴급대책 발표이전	<u>6,355</u>	19,035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대책 기자설명회('14.03.12) 이후부터 2014.10.31.까지의 발굴 실적	긴급대책 발표이후	<u>2,827</u>	18,558
2015년 예산 심의 (현재)	<사업 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에 124억7천만원 총 136억2천여만원 편성		14,000	

○ 예산 검토시 유의점 :

- 내년 예산안의 세부사업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 이행평가 관리를 위해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홍보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연구용역은 유사 중복적이며, 전시적인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됨.

특히 1회성 행사(국제학술발표회)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i) 제도가 시행된지 2년도 경과되지 않아 그 정책효과가 검증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다는 '시기의 적절성' 문제

ii) 저소득위기 가정 발굴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화려한 국제행사가 합리적인지의 '합목적성'의 문제

iii) 국제행사가 '저소득시민 당사자'가 참여할 개연성이 부족하여 일방적인 시정 홍보에 그칠 개연성이 높고 '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이 높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회성 행사(국제학술발표회)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월일	제목 (대회명)	주최	개요	참여국	예산
2015.10. 17 - 18 (1박 2일)	“서울복지기준”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서울시/ 한국사회 정책학회	주제 : 동아시아 대도시의 사회복 지를 조명한다(서울시민복지기준 의 성과와 과제)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캠 퍼스 시장님 기조연설, 서울시민복 지기준 특별 세션 열어 학술 적 소개논의 계속할 예정	한국, 중국, 일본	6천만원

iv) 또한 서울연구원(3억2천만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3억4천만
원)에서 이미 유사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관련 유사 법률이 국
회 심의과정⁷⁾에 있어,
내년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예견되는 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며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11월 17일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 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개 법안을 말한다. 여야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시켰다. 여야는 기존 4인가족 월 소득 기준을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로 중위소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 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표〉 연구 용역 (1)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

발주처	수행기관	제목	연구기간	최종보고일(납품)	내용 및 성격	용역비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2012.2 ~ 2012.9	2012. 9.	학술용역/수의계약	3억 2800만원
서울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13.4 ~ 2014.2	2014. 4.	학술용역/수의계약	3억 4790만원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2015년 초 ~ (8개월)	2015년 말	학술용역/수의계약	2억 9천만원

〈표〉 연구 용역 (2) : 저소득시민 복지 관련

학술용역 과제명	수행 기관	기 간	예산 (천원)	목적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모델 개발 학술용역	서울시복지재단	2012. 7 ~ 2012. 12	54,830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분석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서울 연구원	2013. 11 ~ 2014. 7	148,000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제3기(2015~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 연구용역	서울시복지재단	2014. 4 ~ 2014. 12.	60,000	지역단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우석대학교 산학 연구단	2012. 8 ~ 2013. 12	20,000	국내외 재능기부의 운영실태 파악하여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방안 연구 및 지역별 성공 가능한 모형개발

(2) 긴급복지 지원 (사업별 설명서 135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사망·중병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대상(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41.8%가 증가된 196억7천7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7,379,555) 13,868,267	(×10,498,000) 19,677,252	(×3,118,445) 5,808,985	41.8%

- 특징 : 동 사업은 기존의 복지 안전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2006년부터 이미 도입된 긴급복지 지원(희망복지지원과)에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중앙정부(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서 시행된 것과 매우 유사함.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 ‘긴급복지 지원’은 이미 시행중인 조례상의 사업과 다수 중복되고 있는 바,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중앙정부의 제도변화에 대처 미흡

- 이 사업은 생활고를 비관한 송과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

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저소득 취약 틈새계층에 대해 ‘신청주의’에서 ‘적극적 발굴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도입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정책적인 난맥상이 지적되었으며, 내년에 관련 법률(가칭, 세모녀법)에 따라 지원기준(소득 및 재산기준)이 변화가 예상되어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과 범위가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과 평가 없이 예산이 산출되었고, 예산산출 기준을 보면 ‘책자 인쇄 등 홍보비’에 1억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동차량’ 리스비 및 유류비가 사업의 목적 실행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문임. 또한 ‘기동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임.

② 정확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항목 분리 문제

- 사업편성이 정확해야 홍보나 지원이 신속할 것임-
-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새롭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항목을 기존 사업의 동일 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실제로 동일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2개팀이 담당함). 특히 동일 사업 내에서 매칭비율이 다르고, 지원기준도 소득과 재산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이 심의가 매우 난해함.

또한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그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사업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업명을 정하고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 시민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표〉 긴급복지지원과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의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긴급복지 지원(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신규
도입 시기	2006년 3월	2015년(신규)
추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제공	기존의 복지안전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 필요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긴급한 위기가정으로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및 소득 단절, 질병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기능	선지원, 후조사의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만성 빈곤층으로의 유입 방지	긴급복지지원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틈새 취약계층 지원
예산 매칭 비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시비 100%
공통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신속한 맞춤형 지원
차이점	○ 재원분담률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 재원분담률 : 시비 100% ○ 소득 및 재산기준(안) - 최저생계비 180% 이하 ※ 보건복지부 세모녀법 지원기준과 연계 더 완화된 수준으로 추진
'13년 예산	10,641,390(구비 미포함)	-
'14년 예산	11,069,332(구비 미포함)	2,798,935(시비)

‘15년 예산	15,747,000(구비 미포함)	3,930,252(시비) 더함복지상담사 인건비 1,219,452포함등 더함복지상담사 1/2감축 서울형긴급복지 지원비 2,600가구 별도편성
13년대비 ‘14년 예산(증감)	4,677,668	‘14년 신규업무
‘14년대비 ‘15년 예산(증감)	42%	40%

③ 사업의 중복성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면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급식관련경비 지원, 교육관련 경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명절보상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등으로 2013년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등 10개 제도 910억원으로 운영되었고,

2014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9개 제도가 737억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또다시 긴급지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시도는 상당한 사업의 중복이 예상된다.

④ 복지재정 분배의 적절성 문제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복지재정의 분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즉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 중에서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등은 2013년과 2014년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의 다양한 영역이 ‘특정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지원
내역 및 현황

(‘14.10월 말 기준, 단위 : 명, 천원)

제3조 제1항의 구분	2013년			2014년		
	2013년 예산액	2013년 제도	집행액	2014년 예산액	2014년 제도	2014년 집행액
계	91,085,966	10개 제도	83,034,097	73,723,621	9개 제도	65,912,149
1. 급식관련경비 지원	18,886,134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17,987,221	17,964,964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16,169,083 (10월기준)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22,519,754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 (교육경비)	8,239,323	22,952,976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 (교육경비)	7,023,632
3.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	-	-	-	-	-
4. 명절보상품 지원	(22,519,754)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7,344,210	(22,952,976)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7,598,670

		지원 (명절위문) 저소득			지원 (명절위문) 저소득	
5. 월동대책비 지원	(22,519,754)	시민 부가급여 지원 (월동대책비)	6,422,900	(22,952,976)	시민 부가급여 지원 (월동대책비)	6,668,356
6. 긴급구호비 지원	-	-	-	-	-	-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0,578,805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저소득	5,488,653	9,733,880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7,403,172
	11,112,019	시민 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10,859,106	사업종료	사업종료	사업종료
	6,934,465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저소득자녀	6,834,145	3,303,563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저소득 자녀	3,302,963
	8,204,105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8,104,105	7,327,646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7,327,646
	7,795,146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7,028,317	7,517,053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6,577,859
	4,589,578	노숙인 의료보호	4,289,037	4,412,139	노숙인 의료보호	3,365,768
	450,000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437,000	494,000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475,000
	15,960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80	17,400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

○ 검토 유의사항 :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2014년 상반기 동안에 월평균 긴급복지는 1,362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324명이 발굴됨.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되어 복지수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

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수혜기준의 완화만을 상정하여 복지수혜자의 폭을 대폭 늘리고 '동 주민센터 허브화 사업'등과 연계한다면 복지가 자칫 '퍼주기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별 발굴 실적 및 지원 실적

(단위 : 명, 가구)

기간	특징	서울형 기초보장제 발굴 (복지사각지대해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긴급복지 지원
		계	기초	서울형	타급여		
2014년 예산상의 목표치 (연인원)		37,000	17,000	10,000	10,000		16,800
2014.11.1.현재 총인원 (누계)		50,980	28,859	9,182	12,939	208,745	14,843
2013년 월평균 발굴실적		3,820	1,796	943	1,082	2,093	954
2014.1.1.~2014.6.30.까지의 기간동안의 발굴 실적(월평균)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 일부완화	2,731	1,815	266	650	2,324	1,362

(3)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명서 140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 하는 희망온돌사업을 홍보하여 기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과 민간재원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5.5%가 증가한 6억6천7백만원이 편성됨.
- 특징 : 시비 100%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민간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등과도 내용이 유사한 성격을 지님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 ①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가 2011년 11월 출범하여, 30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등과 그 내용과 활동이 유사함.
- ② 희망온돌 홍보사업의 중복성
 - i)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홍보물 제작·배포(포스터, 전동차, 버스 광고 등) 등으로 5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시기적으로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되었다는 점, ii) 홍보물이 과거와 유사하게

나 차별화가 시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의 동일사업의 홍보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능동적이고 연중 지속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시 사업 중 서울시복지재단의 홍보물 제작 목록(2014년)
- 홍보물중에서 나눔이웃 홍보물 제목만 추출하여 정리-

연번	홍보물명	지출액 (천원)	제작물품	제작개수
1	나눔이웃 활동배지 제작	4,493	배지	3,000개
2	나눔이웃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4,744	리플릿, 포스터	리플릿20,000부/ 포스터2,000부
3	서울시 복지사업 후원기 관 개발을 위한 홍보물 제작	3,000	다이어리	150개
4	나눔이웃 홍보교육용 영 상물 제작	4,566	동영상	1건
5	나눔이웃 활성화사업 복 지전단지 제작	990	전단지	10,000부
6	나눔이웃 활동배지 증정	4,733	나눔이웃 배지	2,000개
7	서울시 복지사업 후원기 관 예우 기념품	5,016	도자액자	80개

③ 유사 중복 위원회 설치 여부 검토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울시민복지기
준 운영위원회’,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서울시민복지기

준 운영위원회'의 경우 방침으로만 설치되어 내년에 2천7백원이 편성됨.

또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협의회)가 서울시복지재단에도 4개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재단에 설치된 위원회(협의회)와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각종 위원회의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와 유사위원회 비교

구 분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조례 제5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 시장방침 제399호 (12.12.19)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보고 : 행정1부시장 방침 제 250호(14.8.4)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 회조례
최초 설치연도	2011년	2014년 7월 1일	1993년
구성 인원	29명('14.10현재)	31명	16명('14.10월 기준) -위촉직14명,당연직2명
민:관 비율	○민 : 관 = 100 : 0	○ 민 : 관 = 100 : 0	○민:관 = 7:2
기 능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자문 -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발 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 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기부·나눔문화의 사회 적 확산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 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복지기준 이 행에 대한 감사·평가 및 자문 등 기능 수행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시 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 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 제도개선사항 심의, 건의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 에 관한 사항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 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 의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
2014년	16,600천원	○ 2014년 별도예산 편성 안 함	10,600천원

예산액			
2015년 예산액	16,600천원	27,000천원	13,600천원
전년대비 증감액	-	증 27,000천원	3,000천원
전년대비 증감율	0%	증 100 %	28.3%
예산집행 실적	9,450천원(11.20기준)	4,500천원	예산집행(11.20기준) 7,357천원(69.4%)
활동기한	2013.4.1.~2015.3.31	'14.9.26 ~'16.6.30	2014.7.3.~2016.7.2.

〈표〉 저소득 주민 관련 서울시복지재단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협의회)명	구성인원	기능 및 목적	2014예산 (천원)
희망온돌 자치구 지역복지기금 활성화 사업 자문위원회	4명	· 사업수행 대표기관 선정 및 배분기준안 세부지침마련 · 사업수행대표기관방문자문등	1,944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자문·추진위원회	6명	· 사업기획 및 실행내용 총괄자문 · 실행기관선정심사및현장추진	3,300
나눔이웃 주민대표협의체	15명	· 나눔이웃 간 소통 및 관계형성 · 간담회, 현장견학을 통해 지역활동에 대한 식견확장	3,470
나눔이웃 실무자협의체	16명	· 나눔이웃 지속화 방안마련을 위한 현장의견수렴	1,000

○ 검토 유의사항 :

i) '방침'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 적절성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는 제도적인 근거없이 '방침'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특히 내년 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ii) 신규사업을 기존사업의 일부에 포함시켜 혼선 초래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매칭비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기준이나 내

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의 일부로 편성하여,
신규사업(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신규)을 쉽게 찾기도 힘들고 해석도 난
해하며, 특히 동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소
득의 이해를 이끌어 내기 힘들고, 저소득층 대상의 홍보에도 어려
움이 있을 것임.

향후 특정 사업에 집행부 여러 팀이 참여하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은 사업명을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별 설명서 112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주거·창업·고등교
육 등을 위한 자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대비
62.7%가 감소된 12억3천2백만원이 편성됨.
- 사업내용은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축액은 소득별로 차등하여 선택
(5~20만원/월, 3년 만기)하며, 본인저축액 대비 서울시 매칭지
원액은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⁸⁾으로 지원하며,
100% 시비 사업임.

8) 매칭지원금 지원 비율 : 2012년 참가자까지는 1:1 매칭, 2013년 이후 참가
자 부터는 수급자 1:1 매칭, 비수급자 1:0.5 매칭

○ 동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통장 참여지수의 감소와 민간후원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희망플러스통장 연도별 참여 대상 가구를 살펴보면, 2013년 180명, 2014년 98명(2014.9월 기준) 등 매년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약정 인원이 2012년 416가구, 2013년 402가구, 2014년 372(9월말) 등 소폭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재원 적립은 ① 본인적립금, ② 시 예산, ③ 민간후원금 등으로 되어 있는 바, 민간후원금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에서 민간들이 참여 하여 후원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를 늘려나 가야 할 것임.

〈표〉 연도별 참여 대상 가구 현황(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단위 : 명]

년도	구분	약정인원 (누적)	신규인원	현원 (누적)	중도해지자 (저축전탈퇴 포함)	저축완료자	저축완료자 제외 현원
2012 년	희망	16,133	759	14,702	476	8,964	5,738
	꿈나래	15,983	805	13,459	949	-	13,459
	합계	32,116	1,564	28,161	1,425	8,964	19,197
2013 년	희망	16,997	864	15,386	180	2,671	3,751
	꿈나래	16,826	843	13,496	806	-	13,496
	합계	33,823	1,707	28,882	986	2,671	17,247
2014 년 (2014.9 월 기준)	희망	16,997	-	15,288	98	1,576	2,077
	꿈나래	16,826	-	13,018	478	-	13,018
	합계	33,823	-	28,306	576	1,576	15,095

〈표〉 재원 적립내용(본인적립금, 시 예산, 민간후원금 등의 비율 및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0,887,800	100	44,703,200	100	55,887,500	100	47,755,000	100	20,444,300	100	65,999,300	100	
본인적립금	5,443,900	50	22,351,600	50	27,943,750	50	23,877,500	50	10,336,000	50.6	3,502,500	53.7	
매 청 지 원 금	소 계	5,443,900	50	22,351,600	50	27,943,750	50	23,877,500	50	10,078,200	49.4	3,017,300	46.3
	시 예산	2,721,950	25	11,175,800	25	13,971,875	25	11,988,750	25	6,046,900	29.6	2,112,145	32.4
	민간후원금	2,721,950	25	11,175,800	25	13,971,875	25	11,988,750	25	4,031,300	19.8	905,205	13.9

(5) 희망키움통장 I · II (사업별 설명서 586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강화로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대비 24%가 증가된 44억5천9백만원이 편성됨.
- 문제점 및 분석 :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유사하며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됨.
 이는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사업’ 등과 비교하면, 사업대상자 및 지급요건이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 시민 자산형성지원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

〈표〉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 통장과의 비교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최초시행연도	‘10년	‘14년 7월	‘09년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업대상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비수급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이상)	차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중 근로중 인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중 (만14세이하 자녀 양육중인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정부지원금+민간매칭금 (최대 6배지급)	본인저축액+정부지원금 (1:1매칭지원)	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지원방법	시·군·구에서 신청받아 자체 선정 (탈수급 조건으로 신청율이 높지 않음)	시·군·구에서 추천 받아 민간위탁기관(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최종 선정	저축액 대비 100%(수급자) 또는 50%(비수급자)의 매칭금 지원, 각종 교육 및 사례관리	
공통점	저소득 시민 자산형성지원 (단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 지급용으로 제한)			
차이점	사업대상자 및 지급요건이 다름 (보건복지부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 이 수혜금액이 가장 높으나, 탈수급시 지급되며, 나머지 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 단 기간중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면 중도지급 후 해지)			
수혜자 본인입장에서 3년만기 예금을 했을 때 수혜금액	4인가구 기준 최대 2,300만원(월10만원저축)	720만원 + 이자 (월 10만원 저축)	수급자 : 720만원+이자(10만원저축) 비수급자 : 1.080만원+이자(20만원저축)	수급자 : 720만원 + 이자(10만원적립) 비수급자 : 540만원+ 이자(10만원적립)
본인입장에서의 수혜금액 산출근거 약속	본인저축액+정부지원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대비 최대6배지급)	본인저축액의 100%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수급자 - 본인저축액의100%지원 비수급자 - 본인저축액의50%지원	
예산매칭(국:시:구:민간)	국비60%, 시비28%,	국비50%, 시비50%	시비60%, 민간재원40%	

	구비12%			
2015년예산(천원)	1,988,800	2,374,336	1,232,394	5,067,036
2014년 대비 신규 인원 증감	△180가구 (2014년 가입 유지가구수 - 2015년 가입 유지예상가구 수)	증 2,538 (2014년 목표 1440가구 ⇒ 2015년 모집 목표 3,978가 구)	△133 (2014년 신규약 정체결 가구수 -2015년 신규모 집 목표 가구수)	△62 (2014년 신규 약정체결 가구 수-2015년 신 규모집 목표 가 구수)

(6)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사업별 설명서 118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저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에 신규로 3억7천만원을 편성함.
- 특징 : 18세 이상 ~ 34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청년층 가구중 1,000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그 모형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과 매우 유사함.

(7) 소결 : 분석과 결론

- ① ‘사람 중심’의 복지를 위해 ‘실천현장과 연계’ 필요
-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사람 중심’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 주민을 사업(서울형기초보장제도)이 시행된지 2년도 안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하는 등 ‘사람중심’이 아닌 ‘정책과 홍보’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사업명을 비롯한 예산 편성과 내용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예산편성의 행정편의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
매칭비율과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여 201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에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복지현장과 괴리된 정책 시행

- 내년 예산의 편성사업을 보면,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 도입사업’의 사무관리비에만 1억2천7백만원(사업별 설명서 41쪽), ‘희망운동사업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에 9천1백만원(사업별 설명서 14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억7백원(사업별 설명서 137쪽)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사료됨.
-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구와 지역복지실천 현장과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지원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누락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③ 중복유사한 통장사업 -> 경쟁력있는 통장으로 통합필요

-서울시 통장사업 가입 감소추세... 보건복지부 통장사업 증가추세-

○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등 2개 통장사업은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통장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참여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희망키움 통장’의 연도별 신규가입자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191명, 2013년도에 625명 등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가입자는 2011년 1,413명에서, 2012년 416명으로 대폭 감소추세에 있음.

〈표〉 희망플러스통장 신규가입자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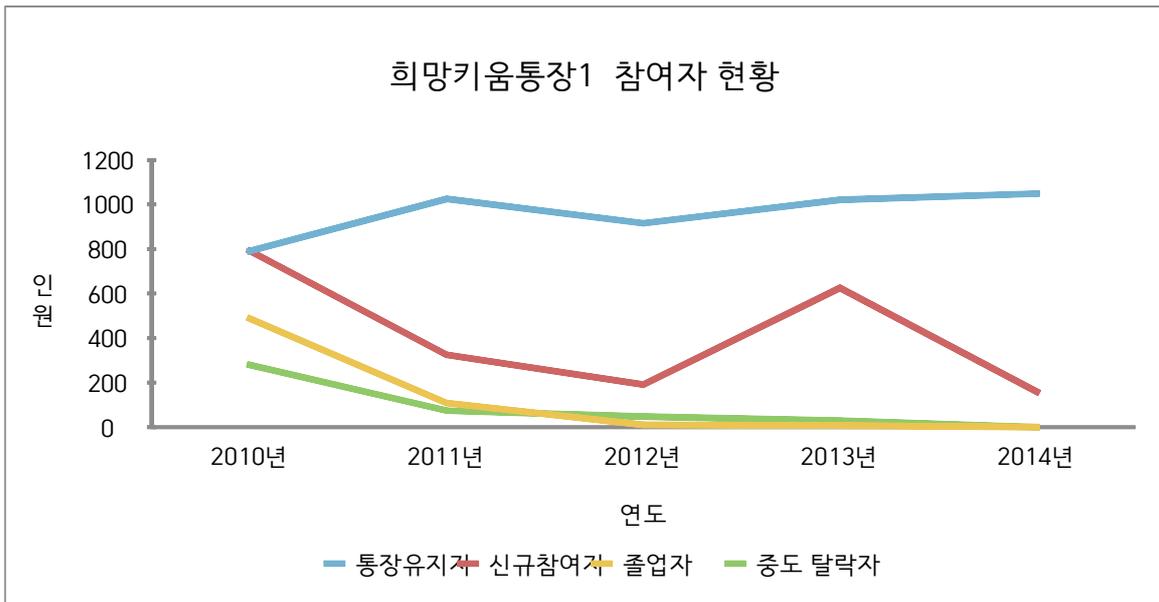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6,997	9,977	4,743	1,413	416	448
○ 2009년 ~ 2014.6.현재 총 약정가구(누계) : 총 16,997가구					
○ 희망플러스통장 졸업가구 : 13,211가구(2009~2010년 가입자)					

- 즉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I〉사업과 병행하여 〈희망키움통장 II〉사업이 시행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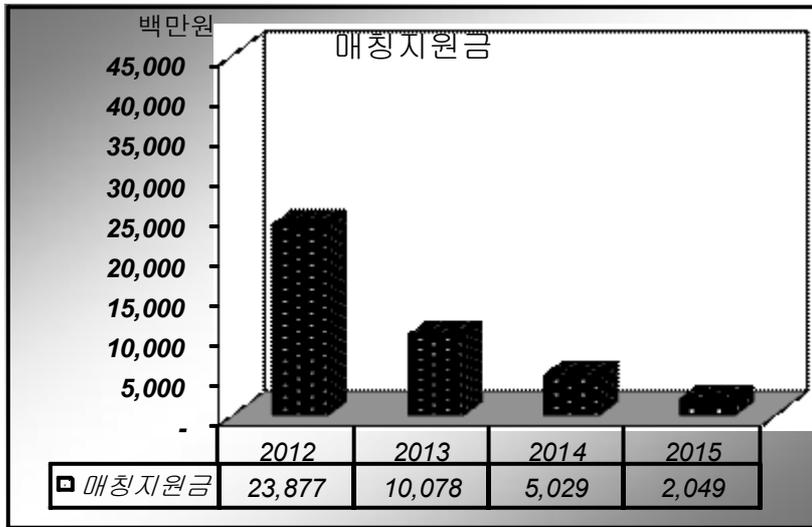
- 따라서 유사중복된 통장사업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장기지향적인 관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표〉 ‘희망키움통장 I’에 대한 사업 참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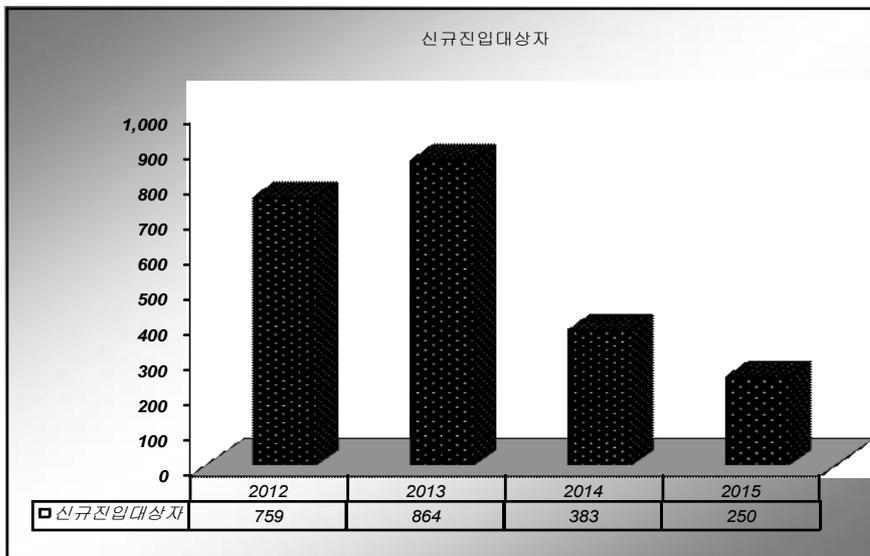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신규가입자 (명)	791	325	191	625	159	2,091
졸업자 (탈수급 해 지자)	487	108	10	7	-	612
유지자	25	143	133	589	159	1,049
중도탈락자	279	74	48	29	-	430
서울시보조 금(단위:천 원)	1,551,0 92	1,557,1 67	894,722	968,033	993,681	



〈그림〉 희망키움통장 I 사업 현황



〈그림〉 희망플러스통장 연도별 매칭지원금 및 총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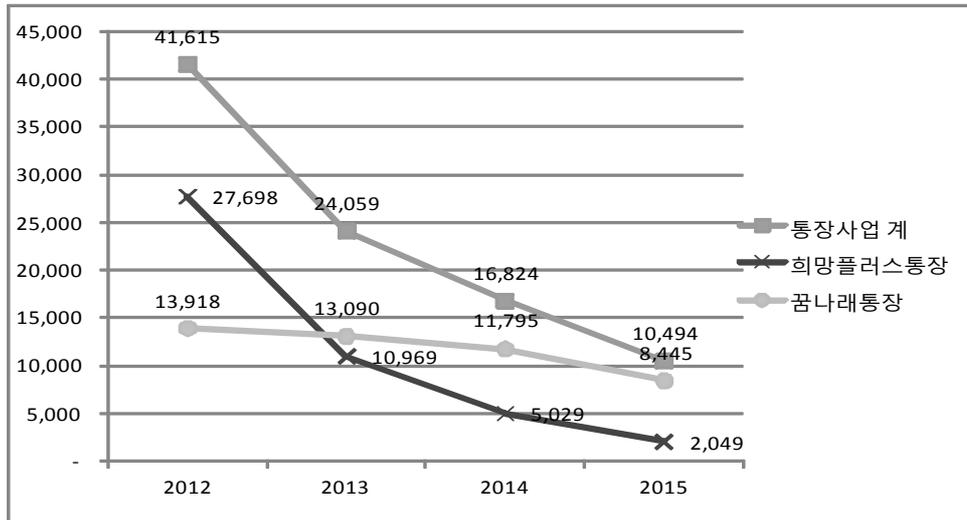


〈그림〉 희망플러스 통장 연도별 신규진입대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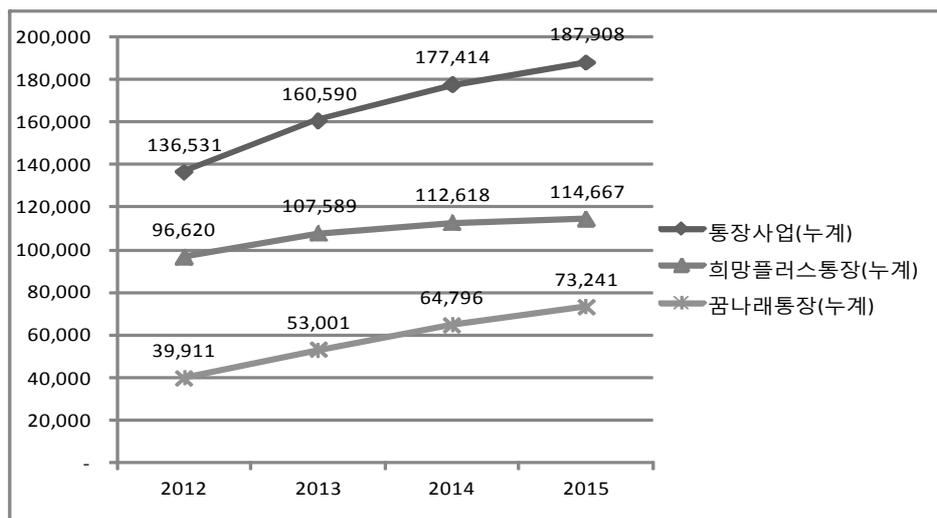
③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 서울시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의 참여자와 그 운영 사업비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청년두배 통장’(사업별 설명서, 118쪽)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아직 사업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저 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에 대한 통계 자체가 산출되지 않는 상황임.



〈그림〉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비 추이(2012~2015)



〈그림〉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장사업비 누계 추이(2012~2015)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 :

시설간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타당성 점검

- <쟁점>**
-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치구별 격차 문제 : 사회적 약자의 이용의 적절성 문제
 - ②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지표와 범주 확대 필요
 - ③ 사회복지기관의 예산구조를 보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 차지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고, 프로그램비율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음.
 - ④ 시설의 민간후원 노력은 퇴보... 서울시 보조금에만 의존.
 - ⑤ “서울 시외”시설의 보조금 지속적인 지원 문제 : 이용접근도 떨어지고 서울시민 이용을 저조
 - ⑥ 인생이모작센터 설치시 자치구 재정(부담) 고려하는지 여부 : 지역 격차 완화 필요

☞ 사업별 설명서 : 54쪽, 152쪽, 235쪽, 174쪽, 160쪽

(1)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별 설명서 54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691억1천2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7,051,139	69,112,356	2,061,217	3.1%

- 특징 : 종합복지관은 설립주체가 시립, 구립, SH, LH, 법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운영주체도 사회복지법인(71개), 재단법인(11개), 학교법인(11개), 사단법인(1개) 등으로 나누어져 그 운영 지원의 형태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음.

이를 2014년을 기준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94개소를 지원한 반면에,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은 2개소, 이동목욕사업지원 20개소, 상담소 지원 2개소,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2개소,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26개소, 기능전환특화(마을지향복지관) 21개소 등으로 복잡함.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종합사회복지관 개소수의 지역간 격차 문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주민수 등과의 상관관계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치구마다 그 개소수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수와 자치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등과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음. 예를 들면 강서구 10개, 노원구가 8개,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6개 이며, 반면에 종로와 중구는 각각 1개에 불과함.

② 자치구와 서울시의 지도감독의 결과가 예산에 미반영

-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와 서울시 보조금의 차등지원, 지도감독의 결과가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 즉 자치구별로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시 보조금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거의 자치구에 맡겨져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복지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매우 적음.

③ 복지관 평가지표와 범주의 다양화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1차례에 인적자원, 표준사업비 등의 평가 지표⁹⁾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범주(갑,을,병,정)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바, 평가 지표와 범주를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및 배점 비율

▷ 인적자원 : 50%(인력규모 40%, 인건비 10%)

- 양적측면(40%) :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관 인력규모(월별과약)

- 질적측면(10%) : 사회복지관 인력의 개인별·월별 총 지급액

▷ 표준사업비 : 30%(표준사업지수 20%, 표준사업비 10%)

- 표준사업지수(20%) : (순수보조금 사업비와 별도보조금사업 기관 자부담액) / 별도보조금 사업비를 제외한 복지관 사업비 × 100

- 표준사업비(10%) : 가족복지·지역사회복지·자활사업의 순수사업비

▷ 평가결과 : 20%(사회복지관 정기 평가결과)

④ 신목종합사회복지관(시립)의 인건비 비중 높음

-2015년의 인건비 비중은 68.1%로 매년 증가 추세-

- 매년 종합복지관 예산은 “시립” 1개소(신목종합사회복지관)만을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61.7%에서 2015년 68.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3년 28.8%에서 2015년 24.8%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

- 앞으로 ‘시립’종합복지관은 사업비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96개 중에서 시립이 하나뿐이라는 점을 특화하여, 다른 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보다는 ‘시립’복지관으로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달체계의 모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 명)

구분 (특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기관예산총액	1,748,678		1,912,087		2,041,170		1,936,625	
서울시 보조금(전체)	1,144,077		1,251,093		1,322,147		1,337,060	
인건비	742,182	64.9	771,771	61.7	820,117	62	909,874	68.1
운영비	60,448	5.3	48,603	3.9	39,107	3	65,779	4.9
기능보강비	27,446	2.4	70,433	5.6	128,599	9.7	30,000	2.2
사업비	314,001	27.4	360,286	28.8	334,324	25.3	331,407	24.8
임차료	-	-	-	-	-	-	-	-
전체예산 중	65.4%		65.4%		64.8%		69%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원수	32명	35명	32명	32명
전년대비 인원증감수	5명	3명	△3명	-

〈표〉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치구별 개소수 및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14년 시보조금	'15년 시보조금
	계	96	66,124,642	68,777,283
1	종로구	1	726,084	<p>※ 자치구별 지원액 미정</p> <p>매년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4개 범주 (갑,을,병,정)로 차등지원</p>
2	중구	1	672,924	
3	용산구	2	1,284,679	
4	성동구	3	2,013,358	
5	광진구	3	1,973,056	
6	동대문구	2	1,389,911	
7	중랑구	4	2,872,751	
8	성북구	5	3,391,476	
9	강북구	5	2,852,407	
10	도봉구	3	1,951,828	
11	노원구	8	6,032,840	
12	은평구	3	1,912,355	
13	서대문구	3	2,143,631	
14	마포구	2	1,416,487	
15	양천구	5	3,393,053	
16	강서구	10	7,513,696	
17	구로구	3	1,986,422	
18	금천구	2	1,367,912	
19	영등포구	2	1,278,606	
20	동작구	6	4,063,962	
21	관악구	5	3,370,608	
22	서초구	4	2,938,978	
23	강남구	6	4,396,111	
24	송파구	6	3,818,971	
25	강동구	2	1,362,536	

(2)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사업별 설명서 152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양로·요양시설에 보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와 최종 대비 7.29%가 증가한 105억6천3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9,846,080	(×1,909,517) 10,563,841	(×1,909,517) 717,761	7.29%

- 특징 : 동 사업은 사업대상시설 155개소(양로7, 요양 148)에 대해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함.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후원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

사업대상시설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① 민간후원 노력 미미

- 민간후원금 내년 감소하여, 지역 민간자원과의 네트워크 중요-
- 민간후원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민간 후원금을 적극 개발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서울시립시설

만을 대상으로 후원금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후원금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면,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년간 절반 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지출할 때 일정한 평가 등을 거쳐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평가 지표에 후원금 모금실적 등을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시립 사회복지시설 민간후원금 현황

(단위 : 천원, '14.9.30현재)

시 설 명	소재지	민간후원금		
		2012년	2013년	2014년
소 계		4,553,876	4,980,123	3,298,981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186,531	218,288	207,238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169,319	224,472	204,922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90,267	378,725	215,319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210,385	173,468	89,947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255,835	142,667	196,558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117,866	95,515	127,343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166,111	149,535	119,950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228,865	55,885	31,149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178,688	275,163	168,712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152,828	200,503	141,402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143,551	118,978	52,762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158,116	214,033	124,104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239,808	437,088	318,207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471,801	467,729	393,723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161,267	233,874	98,678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146,187	97,436	40,058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318,804	257,921	144,435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203,379	111,048	46,513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354,934	542,418	194,978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55,967	67,544	21,827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94,081	97,905	54,51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3,420	8,782	1,306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73,316	43,096	21,588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152,141	123,144	115,423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30,514	61,624	50,297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 군포시	49,756	57,961	38,153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68,117	44,122	42,302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 용인시	72,022	81,199	37,576

② “서울 시외”지역 시설... 이용불편하고 서울시민이용 저조

- 노인복지시설은 지역밀착형으로 노인이 가까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의 일부가 “서울 시외”지역 설치되어 이용상의 문제가 있음. 즉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서울 ‘시외’지역에 설치된 시설되는 경우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지역적

인 한계가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순애 시니어타운’요양시설의 경우 서울시민이 40%에 불과하며,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금년에 2억3천4백만원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용은 전체 생활인 중에 6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생각건대 시설을 설치할 때 지가와 건축비를 고려하여 지방에 설치 운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시외’지역에 대한 설치 운영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서울시‘시외’지역에 설치된 시설 및 예산 현황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소)	운영기관 명	설치 년월일	시설 총 예산 (백만원)		서울시보조금 (백만원)	
	유형	종류					2013	2014	2013	2014
1	시립	노인 요양시 설	시립영보 노인요양 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483	(재)천주 교성모영 보수녀회 유지재단	05. 2. 1	1,842	2,020	514	454
2	시립	노인 요양시 설	시립엘림 노인 전문요양 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89	(사복) 엘림복지 회	05. 3. 24	5,572	5,246	1,086	557
3	법인	노인 요양시 설	정원노인 요양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00번길 32-83	(사복) 정원종합 복지원	89. 4. 18	2,046	2,746	316	295
4	법인	노인 요양시 설	정원치매 노인요양 센터	"	(사복) 정원종합 복지원	96. 11. 1	2,805	3,768	259	251
5	법인	노인 요양시 설	광림노인 전문요양 원	강원도 춘천시 서면 경춘로 771-79	(사복) 광림복지 재단	02. 3. 4	2,928	2,738	299	234

6	편의인	노인 요양시 설	순애 시니어타 운	경기도 고양시 고골길178번길 73	(사복) 준명복지 재단	91. 11. 5	1,454	1,481	1	1
7	편의인	노인 요양시 설	순애노인 전문요양 원	"	(사복) 준명복지 재단	99. 3. 24	1,171	1,289	60	40

〈표〉 “시의” 지역에 설치된 서울주민의 이용실태

연번	시설명	이용정도 지표	㉠ 전체 이용자수 (생활인수)		㉡ 서울시민 이용자수 (생활인수)		[㉡/㉠ *100] 전체이용자(생활인) 중에서 서울시민이 차지하는 비율	
			월	일일평균	월	일일평균	비율(월)	비율(일일평 균)
1	시립영보 노인요양원	생활인수	72	72	72	72	100 %	100 %
2	시립엘림노인 전문요양원	생활인수	190	190	171	171	90 %	90 %
3	정원노인 요양원	생활인수	93	93	67	67	72 %	72 %
4	정원치매 노인요양센터	생활인수	132	132	108	108	82 %	82 %
5	광림노인 전문요양원	생활인수	109	109	72	72	66 %	66 %
6	순애 시니어타운	생활인수	49	49	20	20	41 %	41 %
7	순애노인 전문요양원	생활인수	41	41	36	36	88 %	88 %

(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별 설명서 235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어르신과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 등 복합요양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11.2%가 증가된 153억2천3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143,580) 13,548,108	(×71,790) 15,323,947	(×71,790) 1,775,839	11.2%

○ 특징 : 동 사업은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를 지원(215개소)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28개소)하는 등 각종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① 재가복지시설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음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 특정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낮아 종사자의 사기는 물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즉 재가복지시설의 성격상 인건비가 매우 낮은 현실이며, 이로 인해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역시 저하될 우려도 있음. 주거복지·의료복지·여가복지·재가복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시설을 비교해 보면, 재가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감내역
(시설종류별로 지급액, 연봉액, 증감비율)

(단위: 천원, %)

시설종류	2012년			2013년			2014년		
	연봉액	지급액	증감	연봉액	지급액	증감	연봉액	지급액	증감
주거복지	30,977	27,811	4.71	32,016	28,673	3.36	34,092	30,373	6.49
의료복지	-	-	-	-	-	-	-	-	-
여가복지	30,989	27,890	2.65	31,812	28,630	2.65	32,656	29,390	2.65
재가복지	27,626	25,322	1.06	29,852	27,633	1.08	31,080	21,366	1.04
노인보호 전문기관	35,282	34,837	-	36,110	35,615	2.35	38,183	37,657	5.74

- 주1) 의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지급
 주2) 장사시설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과는 상이하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 이와 같이 기관별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¹⁰⁾는 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 운영 법인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예산 재원의 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종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일한 대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인 대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데이케어센터 정원 급증에 대한 문제

- 내년 센터 정원은 18.4% 증가-

10) 주거복지시설의 지원시설의 경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의료복지시설은 의료복지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고 기관상황에 맞게 급여를 정하도록 복지부 사업지침으로 정하고 있음(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또한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개인별 호봉, 경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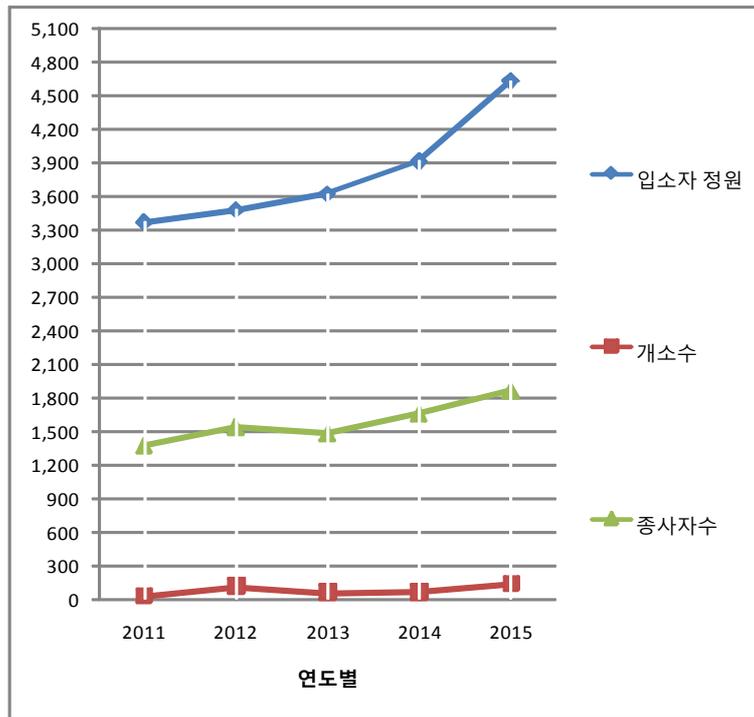
-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정원이 2011년 3,367명에서, 2015년 4,63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3년 4.3%, 2014년 7.9%, 2015년 18.4%로 증가할 예정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개소수를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수 및 입소자 정원, 종사자수 등 현황

(단위:명, 개소,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데이케어센터 인증 사업 개소수	35	120	66	68	140
데이케어센터 개소수(2015년은 산출기초에 따른 계획)	163	171	173	185	215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정원	3,367	3,475	3,623	3,911	4,631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수	1,378	1,543	1,485	1,657	1,867
전년대비 데이케어센터 정원 증감(단위:명)	522	108	148	288	720
전년대비 데이케어센터 정원 증감 비율	18.3%	3.1%	4.3%	7.9%	18.4%

〈그림〉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수 및 입소자 정원, 종사자수 등



〈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개괄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데이케어센터	치매(등급자) 전용 데이케어센터	치매(등급외자) 전용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기능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중 치매등급자 전용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등급외 어르신 중 치매 어르신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등급 외 저소득 재가 어르신에게 가사·간병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개소수	185	4	1	28	1
종사자수	1,657	46	6	89	4
최초 설치연도 (운영지원)	2009년	2015년 <신규>	2015년 <신규>	2008년	2013.9.1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자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자 어르신	등급외자 어르신	저소득 재가 어르신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사업내용	장기요양등급	치매 어르신	요양수가를	등급 외 저	돌봄종사자

	급 어르신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전 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 램 진행	지원받지 못 하는 치매등 급외자 어르 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소득 재가어 르신에게 가 사·간병 등 일상생활 서 비스 지원	들의 신체 적·육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운영비(인 건비포함)	9,720,000	-	-	3,123,658	235,483
2014년 예산	9,720,000	-	-	3,123,658	235,483
2015년 예산	11,040,000	38,400	75,600	3,208,246	259,886
전년대비 증감비율	13.4%	100%	100%	2.7%	10.3%

※ 최초 설치년도는 시설마다 설치년도가 달라 시 운영보조금 지원연도로 작성하였음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별 설명서 174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9.9%가 증가된 297억5천9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27,068,480	29,759,576	2,691,096	9.9%

- 특징 및 문제점:

①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비중... 복지관마다 격차 심함

-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복지관마다 그 양상이 다르며 특히 30%이하를 지출하는 곳과 70이상을 지급하는 곳이 대조를 이룸.

예를 들면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에 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71.9%,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73.2%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이처럼 인건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퇴색할 것임.

〈표〉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특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						
기관예산총액	3,128,398	100	3,279,105	100	3,158,680	100	3,092,109	100
인건비	740,169	64.9	783,178	61.9	833,777	68.2	899,230	71.9
운영비	157,476	13.8	161,708	12.8	172,271	14.1	168,155	13.4
기능보강비	80,911	7.1	167,650	13.2	83,114	6.8	52,610	4.2
사업비	152,615	13.4	146,407	11.6	119,053	9.7	131,315	10.5

〈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특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기관예산총액	2,295,094	-	2,425,830	-	2,557,636	-	2,514,999	-
서울시 보조금	1,114,516		1,217,790		1,173,679		1,198,700	
전체예산 중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48.6%		50.2%		45.9%		47.7%	
인원수(정원)	23		23		23		24	
인건비	722,278	64.8%	778,864	64.0%	810,354	69.0%	876,897	73.2%
운영비	180,161	16.2%	155,091	12.7%	178,973	15.2%	178,704	14.9%
기능보강비	45,736	4.1%	100,377	8.2%	45,310	3.9%	-	-
사업비	158,455	14.2%	151,231	12.4%	136,880	11.7%	143,099	11.9%

〈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특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기관예산총액	2,584,000	100	2,856,000	100	3,232,000	100	3,565,000	100
서울시 보조금	1,123,384		1,190,346		1,176,410		1,255,052	
전체예산 중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44%		42%		36%		35%	
인원수(정원)	25		25		25		26	
전년대비 인원증감수	0		0		0		2	
인건비	720,176	28%	784,515	28%	823,163	26%	933,448	26%
운영비	135,468	5%	139,533	5%	149,429	5%	136,153	4%
기능보강비	54,604	2%	83,656	3%	49,610	2%	56,352	2%
사업비	1,673,752	65%	1,848,296	64%	2,209,798	67%	2,439,047	68%

②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불용 문제

- 노인종합복지관에 배정된 기능보강비의 경우 이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된 문제도 있음. 예를 들면 2013년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30개소 중 26개소를 기능보강을 했는데, 기능보강비 50억 중에서 2억2천7백만원이 불용되어 있음.

〈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사업현황(2013년 결산)

(단위:백만원)

시설종류	시설수	기능보강 시설수	해당시설명	예산액	불용액
노인복지관	30	26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5,023	227
양로시설	18	12	시립 고덕양로원 등	996	39
요양시설	508	229	예사랑노인요양원 등	7,430	86
재가시설	256	123	역삼재가데이케어센터 등	1,322	62

(5)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별 설명서 264쪽)

-인생이모작센터를 중심으로-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노년층 수요 대비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과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13.4%가 증가된 78억5천3백만원이 편성됨.

이중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개 자치구 건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비 100%임.

- 특징 : 인생이모작센터는 현재 2개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지원대상을 총면적 1,000 m^2 이상, 건립부지를 각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2개를 건립할 예정임.

- 문제점 및 분석 :

① 인생이모작센터 설치에 자치구 재정 고려 안됨.

-지역간 격차의 심화 가능성-

- 인생이모작센터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자치구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이를 지원(시비 지원상한액은 15억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음. 이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신축 등의 자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이미 금년에 2개소(은평, 종로)에서 내년 2개소(노원, 영등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어, 향후 자치구간의 재정을 고려한 지원도 시도되어야 할 것임.

〈표〉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2015년 계획
 - 2개소 완료(시립), 2개소 추진 중(구립)

구분	자치구	위 치	층 수 (지상/지하)	규모(m ²)	준공일(예정)
시립	은 평	(구)국립보건원 8동	총5개층	1,112.9	'13.2월 개소
시립	종 로	돈의동 68	총5개층	1,053.14	'14.5월 개소
구립	노 원	상계동 181-14	3/1	1,188	'15.12월
구립	영등포	여의도 56-1	2개층	1,220	'15.12월

② 당초 설립 목적에 벗어난 운영

-다양한 연령층을 배제한 과도한 예산 투입-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50대 베이비붐세대를 겨냥한 인생이모작 센터에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서울시 정책의 초점과 대상이 다소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임.

〈표〉 인생이모작센터 연령대별 이용현황('14.9월말 기준)

연 번	연령대	서울인생이모작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	
		이용인원(명)	비율(%)	이용인원(명)	비율(%)
1	40대	13	0.9	38	3.6
2	50대	701	47.0	467	44.5
3	60대	448	30.1	343	32.7
4	65~69	236	15.8	172	16.4
5	70대	92	6.2	29	2.8
합계		1,490	100%	1,049	100%

4. 기능보강사업의 적정성, 형평성

<쟁점> ① 시설간의 기능보강비의 형평성 문제 : 재가시설과 양로시설은 감소, 반면에 요양시설의 요양시설 증가율 현격히 높음 (209%)
 ② 보조금 지원 심사 및 결정과정에 투명성 확보 필요

☞ 사업별 설명서 ; 160쪽,

(1)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별 설명서 160쪽)

○ 편성예산 : 동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대비 70.9%가 증가된 66억9천2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X833,456) 3,914,952	(X2,101,581) 6,692,398	(×1,268,125) 2,777,446	70.9%

○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분석

① 요양시설의 기능보강비 증가율 현격히 높음

- 재가시설과 양로시설 감소.. 반면에 요양시설 증가율 209%임-

- 어르신복지시설¹¹⁾의 내년 서울시보조금만을 분석해 보면, 총 812개 중 양로시설과 재가시설은 전년대비 기능보강 개소수와 기능보강비 예산이 각각 감소한 반면에, 요양시설(508개)의 1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09.1%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의 증축 등 공공요양시설(시립.구립.법인) 증축에 따른 것에 따른 것이지만, 재가시설과 양로시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1)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사업현황(2013~2015)

(*국비는 제외하고, 서울시 예산만을 표기함)

(단위 : 개소, 천원, %)

시설종류	총 시설 수	2013년				2014년 예산		2015년			
		개소수	예산	비용액	비용률 (%)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액	전년대비 개소수 증감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노인복지관	30	26	5,476,892	209,393	3.8	24	2,212,521	24	2,334,236	-	5.5
양로시설	18	13	516,791	-	-	3	22,277	-	-	△3	△100
요양시설	508	227	3,652,683	93,673	2.6	10	669,087	14	2,067,879	4	<u>209.1</u>
재가시설	256	133	659,861	-	-	22	142,092	4	33,702	△18	△76.3
계	812	399	10,306,227	303,066	2.9	59	3,045,977	42	4,435,817	△17	45.6

〈표〉 2015년 요양시설 건립(예정)

시 설 명	정원 (건축규모)	보조금 지원	준 공	비 고
구립 방배노인요양센터 -서초구 방배로27길 13(방배동)	53인	9.2억원 (국50:시50)	2015.10	유휴 동청사 활용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영등포구 도림로 482(문래동3가)	65인 (기존60인)	19.5억원 (국50:시50)	2015.10	증축
강동 강일동성당요양원 -강동구 고덕로476(강일동)	요양64인 (데이케어22인)	- (자체 재원)	2015.9	신축

- 또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문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평가에 따른 것이나, 서울시가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기능보강비의 형평성과 적절성 문제

-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살펴보면, 설립시기가 오래되고 건물이 낡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설에 집중적으로 기능보강비가 보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30개를 분석해 보면, 2000년에 설립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작년엔 14억원이 보조되었고, 94년에 설립된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3년간 7백만원만 보조되어,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또한 기능보강사업이 특정기관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5년간 연속 지급된 곳이 19곳임.

- 기능보강사업의 심사와 예산결정과정은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시설이 연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의 객관적인 평가가 서울시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조정되고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노인종합복지관(30개소) 기능보강비 명세표 현황
(2011년~2015년)

(단위 : 개소, 천원, %)

연번	노인종합복지관명	기능보강비(서울시 보조금)					설립연도	매칭비율 (시:구:법인)
		2015	2014	2013	2012	2011		
1	서울노인복지센터	794,170	69,695	-	999,319	46,120	2001. 4. 1.	100:00:00
2	용산노인종합복지관	30,242	-	940,366	97,316	41,387	2002. 4. 1.	100:00:00
3	성동노인종합복지관	96,992	134,519	35,000	147,651	107,387	2000.10. 2.	100:00:00
4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760,000	93,211	177,342	64,146	2003. 8. 1.	100:00:00
5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441,144	39,416	845,406	85,122	121,360	2003. 2.23.	100:00:00
6	중랑노인종합복지관	8,900	-	149,280	50,224	42,640	1999.12. 1.	100:00:00
7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87,085	135,573	82,730	76,233	1999. 6.30.	100:00:00
8	강북노인종합복지관	69,237	-	1,481,773	48,596	34,007	2000.10. 2.	100:00:00
9	도봉노인종합복지관	99,595	52,610	96,470	167,650	80,911	2000.10. 1.	100:00:00
10	노원노인종합복지관	33,004	114,682	261,360	117,840	49,689	1989. 5. 9.	100:00:00
11	은평노인종합복지관	101,811	152,738	112,750	65,955	38,360	1999. 4. 6.	100:00:00
12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40,992	56,352	49,610	116,986	54,604	2005. 6.14.	100:00:00
13	마포노인종합복지관	133,658	78,198	78,635	121,214	72,353	1999.12.27.	100:00:00
14	강서노인종합복지관	42,232	77,233	96,873	118,810	48,393	1999. 9. 1.	100:00:00
15	구로노인종합복지관	65,956	11,089	200,000	79,650	62,391	1997. 2. 1.	100:00:00
16	금천노인종합복지관	50,202	133,273	44,473	162,104	105,561	2000. 9. 1.	100:00:00
17	동작노인종합복지관	42,905	147,641	46,879	111,100	45,736	2001. 9. 1.	100:00:00
18	관악노인종합복지관	115,785	22,038	14,655	30,723	98,945	1989. 5. 9.	100:00:00
19	강동노인종합복지관	-	74,100	86,000	103,700	79,915	2003. 7. 1.	100:00:00
2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000	5,000	19,200	28,850	6,696	2007. 2. 1.	50:50:00
21	약수노인종합복지관	-	13,315	-	7,360	-	1994. 4.25.	50:50:00
22	신내노인종합복지관	-	-	20,000	23,716	-	2008. 8. 1.	50:50:00
23	양천노인종합복지관	21,751	11,300	6,847	50,000	20,000	1998. 4. 1.	50:50:00
24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2,160	13,100	20,000	204,201	15,440	2000.10. 4.	50:50:00
25	양재노인종합복지관	28,832	20,240	-	27,360	12,250	1998. 3.20.	50:50:00
26	방배노인종합복지관	15,136	25,616	-	13,932	11,450	2009. 7.16.	50:50:00

27	강남노인종합복지관	8,187	15,790	20,000	29,200	17,391	2004.12.31.	50:50:00
28	논현노인종합복지관	4,898	-	3,496	7,360	-	2006. 9.27.	50:50:00
29	송파노인종합복지관	34,519	48,612	19,000	27,360	16,773	1996.11.21.	50:50:00
30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	50,000	25,520	-	1998. 5.10.	50:50:00
계		2,284,308	2,163,642	4,926,857	3,328,891	1,370,138		

〈표〉 2014년 노인시설 기능보강비 검토 및 조정금액

시설유형 및 예산구분	지원 및 부분지원 의견 사업	서울시북 지재단 검토금액 (백만원)	서울시 조정금액 (백만원)
◦ 국고보조 노인복지시설(2015) - 24개소(33건)	◦ (가칭)방배 노인요양센터 설치 리모델링 등 17건	16,369	9,199
◦ 국고보조 노인복지시설(2014 추가) - 3개소(3건)	◦ 상계데이케어센터 주방개선공사 등 1건	254	112
◦ 국고보조 노인복지시설(2014 계획변경) - 1개소(1건)	◦ 시립수락양로원 오배수관 교체공사 등 1건	26	20
◦ 노인복지관(2015) - 32개소(125건)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개보수 등 65건	5,089	2,788
노인복지시설 소계 60개소(162건)	88건	20,863	12,121

5. 복지전달체계 및 각종 협의회 수탁 사업 :

시민의 생활밀접성과 편리성 등 종합적 접근 필요

<p><쟁점> 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역 '복지관'과 '동 주민복지센터'와의 중복성 우려, 기존복지관 기능 황폐화 점검</p> <p>② 동주민센터가 복지·보건·고용 등의 문제를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 기형적 복지전달체계(중간체계 없음) 점검</p> <p>③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근거 미비, 운영보조의 적정성 문제 점검</p>

☞ 사업별 설명서 : 61쪽, 73쪽, 121쪽,

(1)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별 설명서 61쪽)

- 편성 : 동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마을과 주민이 중심인 복지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마을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의 최종 예산 대비 917.4%가 증가된 54억8천1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66,250) 538,750	(X 75,000) 5,481,400	(X 8,750) 4,942,650	917.4%

○ 문제점 및 분석

① 지역 '복지관'과 '동 주민복지센터'와의 중복성 문제

-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복지관 황폐화 우려 -

- 서울시 복지사업은 여전히 낮은 복지체감도와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 관련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각 자치구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¹²⁾ 등은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이미 1983년부터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런 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구축하려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관과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복될 우려가 있음.

12) 사회복지관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제2조), 이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었다(제18조).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표〉 (가칭)동 마을복지센터와 타 기관과의 역할 내용 관련

구분	洞 마을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44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설치연도	2015 하반기 예정	1921 최초
서비스내용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윈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보편적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주민이 있는 마을 복지생태계 활성화 추진	사례발굴·개입·연계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인 력	9,306명 (사회복지, 방문간호사 4,800명)	1,745명
기 능	찾아가는 복지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수행, 복지·보건·고용 등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생태계·공동체 실현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목 적	동복지기능 강화, 마을복지생태계 조성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개소수	- 2015년 하반기부터 개소	99개소
연계 유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3년 예산	없음	65,176,679천원
2014년 예산	340,000천원	67,051,139천원
2014년 예산 집행액	- 2014년 11월~12월중 집행예정	66,665,913천원
2014년 예산 집행율	-	99.4%
양 기관의 차이점	공공기관으로서 민원행정, 복지행정, 마을행정 업무를 수행	민간기관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
양 기관의 공통점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향후 개소수 증감계획	2015년 7월부터 매년 100개소, 2018년 423개소	없음

② 기형적 '전달체계'로 이어질 우려

- 설치 근거를 보면 '洞 마을복지센터'는 '서울시장방침'에 의한 것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사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1921년에 최초로 시작되어 오랜 운영경험이 있으나, '洞 마을복지센터'는 내년 하반기 실시예정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행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행정, 민원, 복지, 주민자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기관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향후 '동 주민 복지센터'로 복지허브화 기능이 강화되면, '복지전달체계'의 중간 기능은 없는 상태에서 하부구조가 자칫 기형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복지·보건·고용 등의 문제를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지'이외에 다른 영역의 행정적인 기능이 단절될 우려가 있음.

〈표〉 동 주민복지센터의 One-stop 통합서비스 내용



〈표〉 ‘동주민센터’와 ‘동마을복지센터’와의 비교

구분	동주민센터	동마을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지방자치법 제6조, 각 자치구조례 ※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코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 2에 근거함	
성격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동에서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조직	기존의 동주민센터에 복지와 마을관련사무 확대
기능	- 행정, 민원, 복지, 주민자치 - 일반행정기관으로의 기능이 강한 반면,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은 약함	- 복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행정 민원 - 복지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됨
내용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자치회관 운영지원, 민방위,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등	- 사회복지업무의 강화 ·방문복지강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능 강화 ·주민자치 확대 - 복지보건고용금융상담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기존 동주민센터업무도 수행하나 일

		부 업무는 區 이관검토
공통점	동 단위 조직, 복지서비스 제공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 : 행정, 민원중심에 복지와 자치 등의 복합기능수행 - 동마을복지센터 : 기존 동주민센터에 비해 복지기능이 강화 	

- 또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데, 향후 ‘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화’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기존 주민의 종합 행정과 민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임.

(2)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별 설명서 73쪽)

- 편성 : 동 사업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대비 9.2%가 증가한 8억5천5백만원이 편성됨.

2014 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783,834	855,799	71,965	9.2%

- 특징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목적사업과 사업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음.

-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신년인사회, 국제협력교류사업, 서울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정책간담회 등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13)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문제점 및 분석 :

① 본래 사업보다는 부수적인 업무에 집중

-본래 사업 사업은 1개이며, 부수사업은 5개-

- 서울시사회복지협회는 본래의 사업은 1개이며, '사회복지 정보센터운영' 등 5개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어, 일부 정책기능은 서울사회복지재단과 중첩되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외연을 확대하고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지원과 업무 위탁도 이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3)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연도별 서울시 지원액 및 예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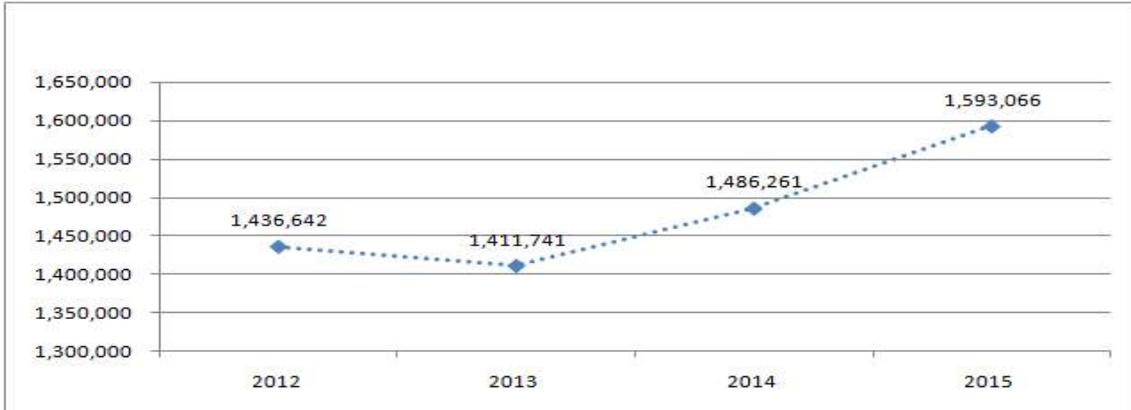
(단위: 천원, %)

지원부서	예산사업명	'12년	'13년	'14년	2015년 예산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계	1,436,642	1,411,741	1,486,261	1,593,066	106,805	7.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사업	769,906	715,910	783,834	855,799	71,965	9.2
희망복지 지원과	사회공헌본부운영	-	48,600	70,000	72,113	2,113	3.0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359,000	346,813	342,839	349,267	6,428	1.9
	광역푸드뱅크센터운영	163,173	132,181	132,905	156,405	23,500	17.7
	푸드나눔카페운영	130,563	119,547	96,766	98,070	1,304	1.3
	희망마차운영	14,000	48,690	59,917	61,412	1,495	2.5

*2015년부터 사회공헌본부운영(전액), 광역푸드뱅크마켓사업(일부) 지원부서 변경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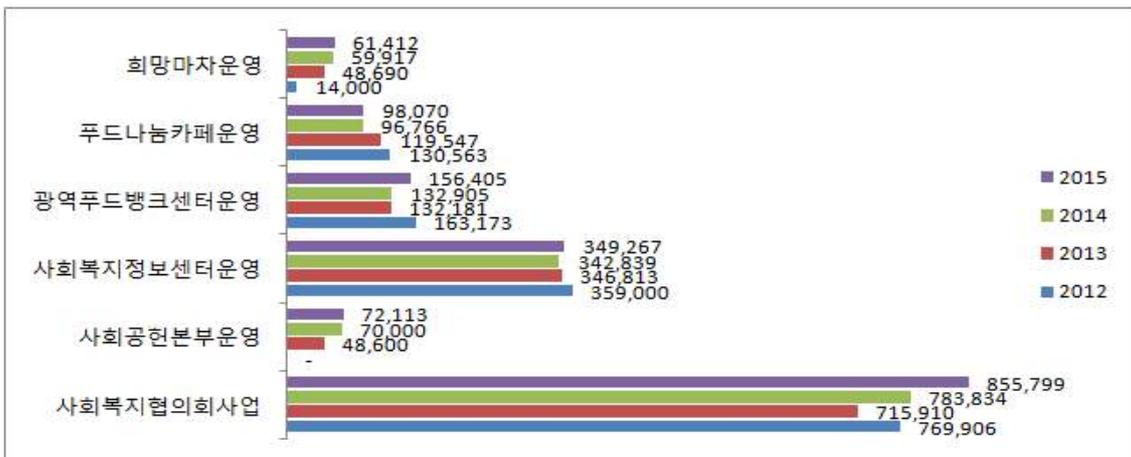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연도별 서울시 지원액

(단위:천원)



<그림>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연도별 비교

(단위:천원)



② 시장 ‘방침’ 보다는 경쟁체제를 통해 사업‘위탁’받아야 함.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침’으로 위탁받아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나 경쟁을 통한 위탁 절차 등이 생략되어 있어, 결국 특혜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특히 ‘희망마차운영’은 시장방침(서민이 따뜻한 겨울 추진대책 시장방침, ‘11.11.4)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푸드나눔카페운영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2012. 8~2016.12.)하여 진행하고 있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각종 사업 예산지원 법적 근거

연번	사업명	지원근거	특징
1	사회복지협의회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협회회의 성격상 회원들 기관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임
2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규정(보건복지부)	- <u>서울복지재단과 일부 중복</u> - <u>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일부 중복</u>

연번	사업명	지원근거	특징
3	광역푸드 뱅크센터 운영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일부 사업이 업무협약과 방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한 업체를 선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
4	푸드나눔카페 운영	○ 업무협약 체결 (2012. 8. ~ 2016. 12.)	
5	희망마차운영	○ 시장방침 제227호 ('11.11.4)	
6	사회공헌본부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3)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별 설명서 121쪽)

- 편성 : 동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정보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 최종 대비 1.9%가 증가한 3억4천9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342,839	349,267	6,428	1.9%

○ 특징 : 시비 100%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교육지원사업, 홍보사업, 전문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정보지 발간 등을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분석 :

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중복우려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정보센터에서 자원봉사 관련 사업은 복지분야의 자원봉사자에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 업무와 일부 중복됨.

② 서울복지재단과 업무 중복 우려

-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발행 ‘사회복지정보지’도 서울복지재단에서 ‘복지이슈 Today’ 정보지 등 유사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정보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 법률홈닥터 운영(공익변호사 1명) 역시, 서울복지재단의 법률지원단의 업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서울복지재단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사업별 설명서 126쪽)

- 편성 : 동 사업은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이용 가능한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광역푸드뱅크센터, 푸드나눔카페, 희망마차,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예산대비 5.3%가 증가한 16억8천6백만원이 편성됨.

(단위 : 천원)

2014최종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B-A)*100/A
1,601,656	1,686,545	84,889	5.3

- 특징 : 동 사업은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부된 식품을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는지의 여부, 형평성, 적시성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런데 자치구별 운영주체의 관심이나 지원도 등에 따라 기부 식품 보유량 및 배분량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자치구별 푸드마켓의 기부식품 보유량 양극화 발생
 - 기부식품은 기부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므로, 기부식품을 기부받아 보유량과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하느냐 관건임. 그런데 자치구별로 푸드마켓의 기부식품 보유량의 양극화가 발생¹⁴⁾하고 있음.

- 또한 이용시설 단체를 보면, 노원구는 114개 시설단체가 이용하는 반면에, 서초는 35개시설이 이용하여 이용격차가 심하며, 이용인원도 1만명이상 되는 자치구가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임. 기부실적과 배분실적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자치구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현황(2014.9.30 현재)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이용 시설단체	이용인원	기부실적	배분실적
서울광역시	17	29,629	6,199,430	799,598
강남구	52	10,129	2,126,590	1,676,925
강동구	64	6,337	517,217	461,411
강북구	66	9,523	2,062,460	2,560,962
강서구	76	6,999	600,187	886,739
관악구	44	10,263	1,012,904	1,013,348
광진구	70	4,001	627,915	824,622
구로구	63	9,935	976,570	1,228,150
금천구	89	6,297	516,931	750,274
노원구	114	18,289	629,560	964,721
도봉구	38	5,543	651,205	588,934
동대문구	34	8,065	824,510	922,446
동작구	59	8,911	781,190	979,988
마포구	84	15,787	742,285	1,062,972
서대문구	34	13,232	968,397	969,104
서초구	35	6,115	644,405	770,940
성동구	51	3,630	755,372	803,712
성북구	65	8,704	376,430	639,573
송파구	42	5,947	510,142	673,041

14) '13. 1~12월 기준 상위 3개소 푸드마켓 세대당 평균 배분금액은 60천 원인데 반해, 하위 3개소 세대당 배분 평균 금액은 12천원으로 5배수 격차 발생(서울시 분석)

양천구	46	12,267	547,524	902,963
영등포구	66	13,173	999,074	1,068,024
용산구	49	5,843	957,581	1,111,330
은평구	101	6,389	379,454	553,758
종로구	58	5,005	692,307	808,849
중 구	35	5,530	912,621	885,525
중랑구	61	10,884	638,185	688,778
합 계	1,513	246,427	26,650,448	24,596,687

- 또한 2015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의 인건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광역은 63%, 기초푸드뱅크는 80%로 매우 높으며,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 80%이상이 되는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임.

〈표〉 광역푸드뱅크의 연도별 운영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특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광역푸드뱅크	80,906	100	90,481	100	91,890	100	103,117	100	119,065	100
인건비	44,906	55.5	47,281	52.3	48,690	53.0	59,917	58.1	75,865	63.7
운영비	36,000	44.5	43,200	47.7	43,200	47.0	43,200	41.9	43,200	36.3

〈표〉 기초푸드뱅크의 연도별 운영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특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예산	비율 (%)
기초푸드뱅크	355,722	100	439,707	100	417,281	100	503,342	100	523,311	100
서울시 보조금	355,722		439,707		417,281		503,342		523,311	
전체예산 중 서울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50%		50%		50%		50%		50%	
전년대비 서울시보조금 증가율	-2.6% (365,300)		23.6%		-5.1%		20.6%		4.0%	
인원수(정원)	26		26		26		26		26	
전년대비 인원증감수	-		-		-		-		-	
인건비	300,472	84.5	315,907	71.8	316,481	75.8	407,042	80.9	422,511	80.7
운영비	55,250	15.5	66,300	15.1	66,300	15.9	96,300	19.1	66,300	12.7
기능보강비	-	-	57,500	13.1	34,500	8.3	-	-	34,500	6.6

6.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방만한 운영구조 개선 필요

<쟁점> ① 출연규모의 적정성 문제 : 매년 재단 출연금과 잉여금의
매년 대폭 증가
② 재단조직 인력 운영의 적절성 문제.
③ 재단의 목적사업(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 사업별 설명서 : 96쪽

○ 편성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에 따른 지원으로,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최종 예산대비 14.3%가 증가한 196억5천4백만원이 편성됨.

○ 문제점과 분석

(1) 매년 재단 출연금과 잉여금의 매년 대폭 증가

-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 출연금대비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1년 29.1%, 2012년 16.1%, 2013년 21.8%, 2014년 20.8%, 2015년 11.9%(추정) 등 최근 4년동안 출연금 중 20%이상이 전년도 잉여금으로 채워지고 있음.
-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 예산편성시 재단에 대한 면밀한 재무구조 분석이 부족

하고, 잉여금 발생과 그 사용에 대해 목인한 결과를 가져와 결국 서울시가 출연금을 늘려 서울시복지재단의 몸짓블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임.

〈표〉 연도별 출연금·자체수입·잉여금 및 수탁사업 현황

(단위: 천원)

회계 년도	예 산	출연금		출연금대비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예산대비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수입	잉여금 (예산대비)		
2011	12,040,000	6,323,431	1,839,608 (15.2%)	29.1	15.2
		17,860			
2012	18,130,432	14,370,435	2,318,335 (12.8%)	16.1	12.8
		3,000			
2013	19,236,600	13,797,100	3,003,163 (15.6%)	21.8	15.6
		43,350			
2014	19,526,509	13,959,000	2,898,765 (14.8%)	20.8	14.8
		23,250			
2015	18,660,038	15,654,000	1,867,954 (10.0%)	11.9	10.0
		27,000			

※ 2015년도 자체수입(수익사업) 및 잉여금은 추정치이며 수탁사업비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의 증가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현 시장 재임시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재정립,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신설,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경영 투명성을 위한 감사실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임.

다만 출연금의 확대가 인원 증가와 임대시설 확충에 따른 경

상비 지출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시민의 복지서비스와 확대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시장 재임시기별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금 현황

조직변경 시 기	시 장	중점 추진내용	예 산 (출연금기준)
2010.3.15	오세훈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설치 • 노인복지센터 설치 • 장애인전환센터 설치 • 서울시 파견공무원인 정책 보좌관(4급) 정원외 인력으로 조정 	8,857백만원
2011.10.27	공석 ※오세훈 시장 퇴임 (201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부서 통폐합 • 일반직과 전문직 직종 통합, 부서간 교류로 인력활용 극대화 • 민간네트워크 강화 • 통합적 서비스 지원 	7,313백만원
2012.7.18	박원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재정립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신설 • 장애인복지 업무의 전문성 및 사업 체계성 제고를 위한 팀신설 	13,704백만원
2012.12.27	박원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공동체 구현 •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 • 전략적 정책개발 및 핵심사업 추진 • 효율적 조직관리 	13,704백만원
2014.1.3	박원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활성화 및 조직슬림화 •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 경영 투명성을 위한 감사실 신설 • 연구수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실 확대 	13,797백만원

(2) 재단조직 인력 운영의 적절성 문제

- 매년 재단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총원(정원의 포함)은 2013년 117명, 2014년 131명, 2015년 136명(예정)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정원외 인력 증감율’을 보면, 2012년 25%, 2013년 90%, 2014년 13.2%로 매년 대폭 증가함. ‘정원외 인력 인건비 증감율’을 보면, 2013년 346.4%, 2014년 8.5%, 2015년 34.6%(예정)로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처럼 최근 단기간에 걸친 인력과 인건비의 대폭증가는 인력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고 안정화되지 못한 조직임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복지정책의 사업이 과도하게 복지재단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닌지, 사업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정원 및 정원외 인원 관련

(단위 : 명, 천원, %)

구분	인력					인건비			전년대비 증감율(%)			
	총원 (정원 외 포함)	정원	정원외 인력			총원 인건비	정원 인건비	정원외 인력	총원 증감 율	정원 외 인력 증감 율	정원 인건 비 증감 율	정원외 인력 인건비 증감율
2011	87	71	16	16	0	4,702,927	4,227,460	475,467				
2012	93	73	20	5	15	5,852,345	5,597,773	254,572	6.9%	25%	24.4%	△46.5%
2013	117	79	38	20	18	6,868,948	5,732,597	1,136,351	25.8%	90%	17.4%	346.4%
2014	131	88	43	25	18	7,200,134	5,967,483	1,232,651	12%	13.2%	4.8%	8.5%
2015(안)	136	88	48	28	20	7,356,834	5,697,539	1,659,295	0%	0%	2.2%	34.6%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합계

(3) 재단의 센터 설립과 운영에 신중한 접근 필요

① ‘방침’으로 설립된 ‘센터’의 적절성 문제

-방침으로 설치될 경우 센터의 존립자체가 불안정 우려-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설치 운영 중인 센터는 5개 센터를 설치하여 11개소를 48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나, 4개의 센터는 시장방침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법률이나 조례에 설치근거 없이 ‘방침’으로만 설치 운영할 경우, 자칫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임의적인 해산도 가능하여, 센터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음.

만약 센터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시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등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 안정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각종 센터의 설치근거와 기능, 인원
(2014.11.현재)

연번	센터명	최초 설치 연도	정원	개소수	설치 근거	기능	유관기관
1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센터	2010	5.5	1	<u>서울시 방침</u>	. 탈시설 희망장애인 개별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통합 지원	
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2011	6.5	1	<u>서울시 방침</u>	. 장애인가족 맞춤형 지원	

						· 지역중심 지원체계 구축 · 복지현장 역량강화	
3	금융복지 상담센터	2013	22	7	<u>서울시</u> 방침	· 금융복지상담 ·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 가정재무설계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2011	5	1	보건복지부 방침	· 지역사회서비스 역량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전문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서울시 포함 16개 시도예 지원단 설치)
5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2012	9	1	<u>서울시</u> 방침	· 복지관련 법률 상담 · 공익소송 · 제도개선 · 복지법률 교육 · 채무자대리인제도 운영	대한법률 구조공단
계	(총 5개)		48	11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및 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팀장)은 겸직이므로 0.5명으로 계산 함

<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와 2015년 예산 등

(단위 : 명, 천원, %)

연번	센터명	2013년 예산	2013년 불용액	2013년 불용율	2014년 예산현액	2014년 집행액(11월 20일기준)	2014년 집행율(11월 20일기준)	2015년 예산안 (천원)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	전년대비 예산 증감율
1	장애인전 환 서비스지 원센터	1,270,486	79,151	6.2%	1,058,675	955,755	90.3%	50,000	-1,008,675	-95.3%
2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227,927	23,136	10.2%	227,837	172,551	75.7%	232,884	5,047	2.2%
3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210,000	8,878	4.2%	290,000	226,382	78.1%	298,000	8,000	2.8%
4	금융복지 상담센터	1,502,802	875,924	58.3%	1,109,981	673,617	60.7%	128,090	-981,891	-88.5%
5	서울사회 복지 공익법센 터	132,000	67,841	51.4%	60,540	38,409	63.4%	75,860	15,320	25.3%
계		3,343,215	1,054,930	31.6%	2,747,033	2,066,714	75.2%	784,834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및 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팀장)은 겸직이므로 0.5명으로 기입

※ 2015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예산 중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1,415,176천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

② 센터의 유사 중복 가능성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설치된 센터는 중앙정부나 그 산하기관에서 법적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복지재단의 센터의 설치는 이들 센터들과 상호 업무가 중복될 개연성이 큼.

예를 들면, 채무조정 서비스의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업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고,

워크아웃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업무를 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할 경우 업무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 특히 '법률 상담'이나 '공익소송',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가정재무설계' 등은 서울시민의 법률과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기인한 점이 있지만, 중앙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까지 법률에 설치 의무도 없는 사항까지 지방정부 출연기관에서 맡게 된다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도 있을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업무와 해당 기관

업 무	유 관 기 관
개인회생, 파산면책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③ 방만한 센터의 운영

- 서울시복지재단의 2013년 결산을 중심으로 불용율을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5개소의 불용율은 31.5%이며, 이중 50%가 넘는 센터 2개가 있음.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1명이 근무하며, 15억원의 예산 중 58.2%가 불용되었으며, 복지법률지원단은 51.3%가 불용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2013년 예산의 불용율(58%)로 높은 이유는, 재단에 설치한 중앙센터를 포함해 6개 센터를 설치했을 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센터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당초 계획 대비 센터 개소수 축소(10개→6개) 및 인력 채용 규모 축소(30명→14명)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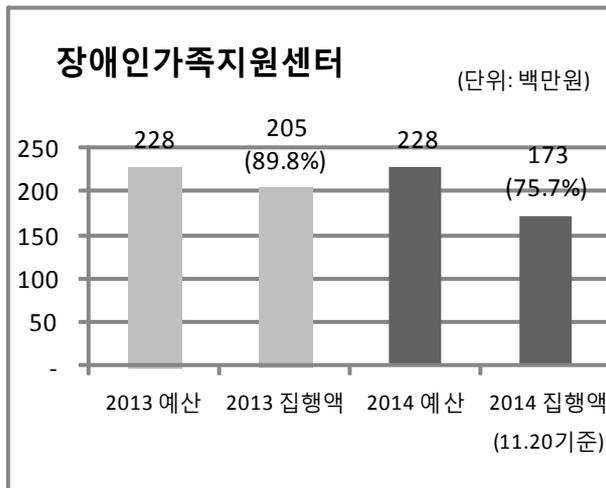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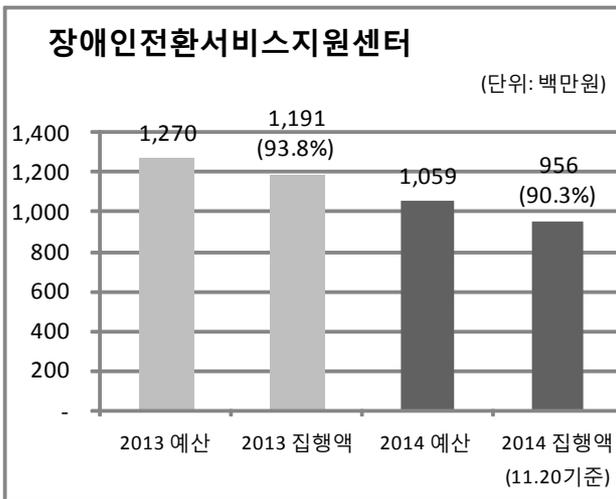
〈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와 2013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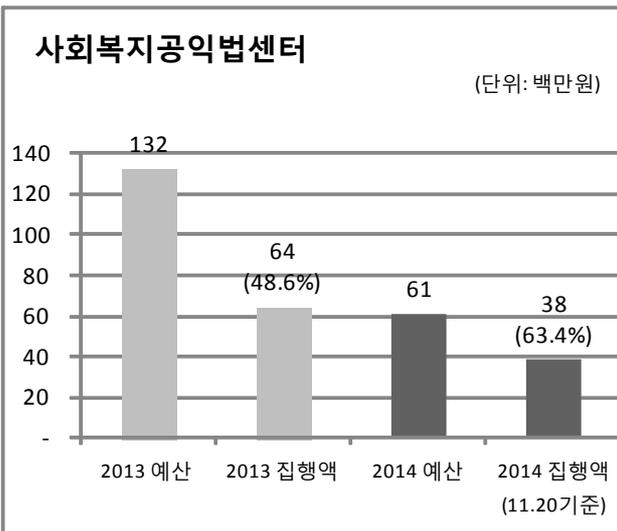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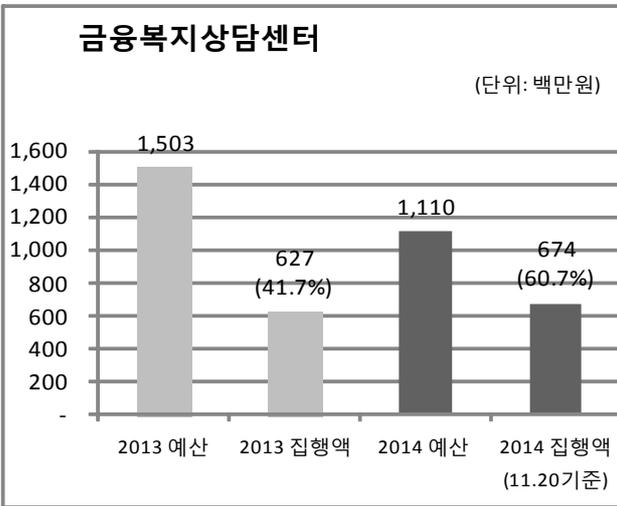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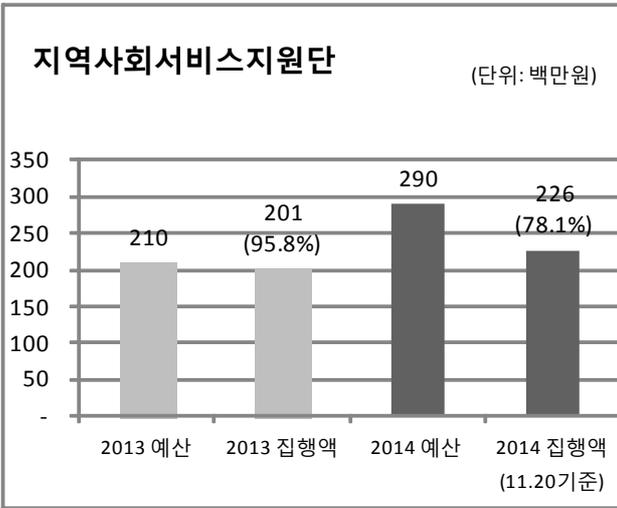
(참고: 2014.6월 결산심사시 제출된 자료)(단위 : 천원)

연 번	센터명	최초 설치 연도	현재 근무 인원	개 소 수	2013년 예산	2013년 불용액	2013년 불용율
1	금융복지상담센터	2013	21	7	1,502,802	875,924	58.2%
2	복지법률지원단	2012	7	1	132,000	67,841	51.3%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1	6	1	227,927	23,136	10.1%
4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2010	5	55	1,270,486	79,151	6.2%
5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1	5	-	210,000	8,879	4.2%
계			44	64	3,343,215	1,054,931	31.5%

〈표〉 서울시복지재단 연도별 센터 집행 현황 비교표 (예산, 집행액, 집행률)





- 이와 같이 서울시복지재단의 센터가 ‘서울시 방침(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이나 ‘계획’으로 설립되어 다소 법적인 설립 근거가 미약하여, 센터설치 시에 의회에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통제를 받은 바 없으며(포괄적인 업무 보고에 그침), 작년(2013년) 센터 예산을 보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심한 것은 그동안 의회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결과로 보임.

(4) 재단의 목적사업(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 목적사업(기금)의 비율이 줄고 있음-
- 재단의 기금¹⁵⁾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플러스통장사업, 꿈나래통장사업, 서민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총3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기금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2012년 20.3%, 2013년 29.5%, 2014년 45.9%로 감소하고 있으며, 희망플러스통장사업, 꿈나래통장사업 등의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5) 고유목적사업비의 근거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32조, 재단 기금관리규정

〈표〉 최근 5년간 회계연도별 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예산			기금 예산		기금현황	
	총액	전년대비 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총액	전년대비 증감율	기금 갯수	운영 인력
2011	12,040	7.9	7.9	43,354	11.6	1	5
2012	18,130	50.6	50.6	34,570	△20.3	1	4
2013	19,236	6.1	6.1	24,388	△29.5	1	7
2014	19,526	1.5	1.5	13,195	△45.9	1	7
2015	18,660	△4.4	△4.4	-	-	-	-

참고)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 예산기준액 기준

(5) 공론화 과정 없는 사업 확대 가능성(시장공약 사업)

- 재단의 내년 예산중에 시민과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음. 예를 들면 서울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두배 통장’(사업별 설명서 118쪽)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 사업으로 ‘청년두배통장 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표〉 서울시복지재단의 시장 공약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명, %)

세부사업명	개요	내용	2015 예산(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서울시민 - 규 모 :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9개소 운영(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신규 3개소) - 사업기간 : 연중	가계재무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등 실질적 구조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128,090
청년두배통장 시스템 구축사업	- 지원대상 : 청년두배통장 참가자 - 규 모 : 시스템 개발 1식, 서버 도입 1종 - 사업기간 : 2015.1 ~ 2015.12	청년두배통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버 도입	100,050

(6) 예측가능하지 못한 사업 시행

- 서울시복지재단 세부사업으로 2015년 예산으로 ‘복지이슈투데이’ 등 총41개 사업에 66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이 있음. 예를 들면 ‘시민고객가치 향상’사업은 200%이상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재단의 내년 신규사업은 지역사회복지중심의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개발 등 12개사업이나, ‘지역 복지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역할 정립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도 종합복지관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

(단위: 천원, %)

연 번	세부 사업명	2014년	2014년	2015년		
		당초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안)	증감액	비율
서울시복지재단 총41개 사업		6,639,379	6,824,379	6,676,810	△147,569	△2.2
기존사업 소계(29개)		6,639,379	6,824,379	6,168,677	△655,702	△9.6
1	복지이슈투데이	50,000	50,000	52,000	2,000	4.0
2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70,000	70,000	30,000	△40,000	△57.1
3	고령친화도시조성사업	64,350	64,350	95,000	30,650	47.6
4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개발	754,000	754,000	883,714	129,714	17.2
5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	100,000	100,000	100,000	0	0.0
6	나눔이웃 활성화	20,000	205,000	200,000	△5,000	△2.4
7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	120,000	120,000	120,000	0	0.0
8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100,000	100,000	100,000	0	0.0
9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80,000	80,000	76,865	△3,135	△3.9
10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	40,000	40,000	50,000	10,000	25.0
11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14,414	14,414	36,805	22,391	155.3
12	서울형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사업	20,000	20,000	20,000	0	0.0
1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1,109,981	1,109,981	128,090	△981,891	△88.5
1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3,230,600	3,230,600	3,337,601	107,001	3.3
15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	-	50,000	50,000	-
16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60,540	60,540	75,860	15,320	25.3
17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55,000	55,000	71,400	16,400	29.8
18	복지거버넌스 강화	10,000	10,000	23,300	13,300	133.0
19	글로벌복지 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67,000	67,000	51,500	△15,500	△23.1
20	복지서울홍보	76,360	76,360	98,000	21,640	28.3
21	웹진 및 뉴스레터 제작	43,640	43,640	52,690	9,050	20.7
22	시민고객가치 향상	8,280	8,280	25,000	16,720	201.9
2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1,670	1,670	3,000	1,330	79.6

24	혁신경영	11,900	11,900	13,900	2,000	16.8
25	2015년 전산자원 유지보수 및 운영	127,517	127,517	114,829	△12,688	△10.0
26	2015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114,727	114,727	136,653	21,926	19.1
27	2015년 홈페이지 및 DB통합 고도화 사업	130,000	130,000	141,070	11,070	8.5
28	정보시스템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도입	14,400	14,400	14,400	0	0.0
29	사업운영 시스템 고도화 사업	145,000	145,000	67,000	△78,000	△53.8
신규사업 소계(12개)		-	-	508,133	508,133	-
30	지역사회복지중심의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개발	-	-	50,000	50,000	-
31	사회복지전문직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수립 연구	-	-	30,000	30,000	-
32	지역 복지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역할 정립 연구	-	-	25,000	25,000	-
33	서울시민복지체감도평가-서울시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 성과모니터링	-	-	20,000	20,000	-
34	서울시 공공매체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개발	-	-	13,090	13,090	-
35	서울시 치매요양 실태 및 욕구조사	-	-	44,000	44,000	-
36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	85,363	85,363	-
37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	11,970	11,970	-
38	요양시설 노인중심 돌봄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	12,960	12,960	-
39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	-	-	20,000	20,000	-
40	청년두배통장 시스템 구축사업	-	-	100,050	100,050	-
41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	-	-	95,700	95,700	-

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편성의 시사점 :

평가여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점검

- | |
|--|
| <p><쟁점> ① 서울시의 시설평가 이후 차기 연도 예산 반영여부 점검
② 복지서비스의 평가에 시민(수혜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p> |
|--|

(1) 시설 평가와 다음연도 예산 반영여부

-2개 시설 유형은 평가만 하고 예산 반영 안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시설별로 그 평가 방법과 내용, 평가주기, 근거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평가 이후에 그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임.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3년마다 평가하는 평가의 경우, 3인1조로 현장평가(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를 통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평가 평가가 전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숙인시설은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31개 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은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예산 지표

연번	시설구분	평가결과 예산반영	평가대상 (개소)	평가지표 (괄호 수치는 배점)
1	사회복지관 (차등지원평가)	○	94	<5개 지표> 인적자원(50%) 표준사업비(30%) 운영평가결과(20%)
2	사회복지관 (정기평가)	○	95	<8영역 85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50%), 인적자원관리 (25%), 시설관리, 재정 및 조직운영 등 (25%)
3	재가노인복지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	50~100	<4영역 38개 지표> 기본요건(5), 맞춤형케어(7), 안심케어(2), 이용권 보장(3)
4	재가노인복지시설 (서울형 재가노인 지원센터 인증)	○	28	<7개분야 33문항> 재정 및 조직 운영(8), 이용 어르신 의 권리(3), 인적자원 관리(4), 서비스 기본지표(3), 사례관리(5), 서비스영역(5), 지역사회와의 관계(5)
5	노인종합복지관	○	32	<6개 영역 109개 지표> 시설 및 환경(5), 재정 및 조직운영(10), 인적자원관리(20), 프로그램 및 서비스 (50), 이용자의 권리(3), 지역사회연계 (12)
6	노숙인시설	×	39	<9개 지표 44개 항목> 사회복지프로그램(30점), 시설및조직 관리(14점) 등
7	지역자활센터	○	31	<8개 지표> 자활성과(26점), 사업단 운영(22점)

<표> 사회복지시설별 평가(지도감독 포함)와 예산 반영 여부 등

시설 구분	평가(지도감독) 실시 현황						평가 결과 반영 관련		
	평가명	평가 주체	평가방법	평가 대상 (개소)	평가 주기	근거	예산 반영 여부	예산 반영 내용	비고
사회 복지 관	사회복지관 운영비 차등지원 평가	서울시	-2인1조 자치구별 교차실사 (공무원, 종사자)	94	1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내부 방침)	○	4개 범주 차등지원 (갑,을,병, 정)	'06년부터 실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보건복 지부 서울시 (추가 지표)	-3인1조 현장 평가 (교수, 공무원, 현장전문 가)	95 (설치 후 3년 경과시설)	3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	우수 기관 인센티브	-인센티브 상위 25개소 5~10백만원(시지원) -60점 미만 하위시설 컨설팅(복지 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서울시 복지재단	-2인1조 현장 평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50~100	3년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계획(내부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시설에 운 영 보 조 금 지원 설치주 체 및 규모별 차등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도입, 갱신(3년주 기) 및 신규 인증(매년 3 회) 평가대상 별 인증주기가 달라 매년 3 회 실시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서울시 복지재단	-2인1조 현장 평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8	3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계획(내부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시설에 운 영 보 조 금 지원 (종사자 3인 규 모) 	13년 도입, 3년마다 갱신
노인 종합 복지 관	노인종합복지 관 운영평가	보건 복지 부 서울 시	-3인1조 현장 평가 (교수, 공무 원, 현장전문 가)	32	3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X	-	
노숙 인시 설	시설 운영 평가	서울시	외 부 기 관 에 위탁 평가	39	3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X		
지역 자활 센터	운영평가	운영 평가	운영평가	31	1년	-사회복지사업법제 43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③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시설 에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8개 시 설에 인센티 브 제공 -하위기관 컨 설팅실시

- 평가 지표도 시설의 특징과 개소수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운영비 차등지원 평가의 경우 94개소를 '4개 범주(갑,을,병,정)'로만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2) 미평가된 시설 중 예산불용액 시설 평가와 예산 편성

-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서울시평가, 서울시의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평가와 관련하여 미집행율이 높은 시설을 살펴보면, 평가를 전혀 받지 않은 시설은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발굴조사

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사랑의 빨래방 운영 (주민참여) 등이 있음.

〈표〉 시설 평가와 예산 미집행을 등

사업명	서울시평가	서울시지도감독	보건복지부평가	2014년 예산현액 (천원)	2015년 예산안 (천원)	2014년 집행잔액 (천원)	2014 미집행률 (%)	미집행사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급여 등 지원	×	×	×	41,581,552	58,150,065	12,168,161	29.3	개별급여 신규 하반기 지급 계시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 (발굴조사비)	×	×	×	420,000	0	420,000	100.0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 국가보훈처(광복회)에서 ‘13.12월말 발굴조사비를 402백만원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불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	○	×	1,702,431	4,358,162	827,698	48.6	◦각 시설별 여건에 따라 계약 지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	○	○	×	721,541	335,104	585,893	81.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대상 신청 수요가 낮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	○	×	4,848,095	2,334,236	2,212,521	45.6	◦행정절차 이행으로 발주지연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	×	4,050,000	0	2,500,000	61.7	◦자치구 건립부지 미 확보로 지원불가
사랑의 빨래방 운영 (주민참여)	×	×	×	60,000	0	20,781	34.6	◦송파구 빨래방 설치 지역 주민 반대로 운영 불가
장사문화 개선	○	○	×	5,040	5,040	2,600	51.6	◦12월 장사시설 점검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	×	×	4,000,000	4,000,000	1,000,200	25.0	◦과주시와 업무협약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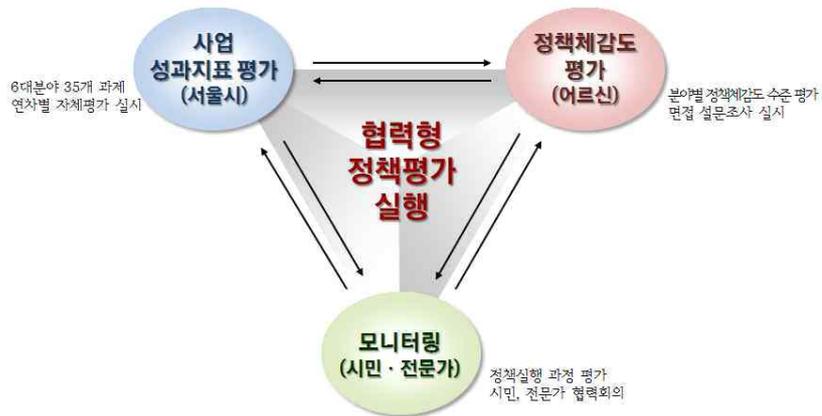
조성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	×	×	603,000	4,652,834	603,000	100.0	°서초구와 업무협의를 중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X	○	해당없음	694,242	650,465	219,362	31%	그룹홈 보증금으로 잔액 집행 예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X	○	해당없음	133,200	80,326	52,874	40%	연말 노숙인 저축왕 인센티브 등으로 잔액 집행 예정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X	X	해당없음	700,000	0	350,000	50%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영등포 구의 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비 반납예정
자활장려금	X	○	○	4,259,000	2,785,938	1,473,062	35%	사업량 감소로 국비 감액내시됨

(3) 예산 편성의 시사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평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의 시행 내용을 점검과 아울러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런 평가에 시민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그림 참조). 서울시복지재단의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의 경우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그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차기연도의 예산반영과는 연계되지 못함.

- 또한 이렇게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평가’, ‘서울시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 수립 : 개념도



〈참고1〉 3년간 세부사업별 예산 비교표(단위:천원)

세부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대비증감	증감률(%)
기초생활수급자급여	576,691,139	614,262,544	751,005,642	136,743,098	22.3%
정부양곡할인지원	13,566,998	13,674,500	12,327,000	△1,347,500	△9.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892,815	13,617,972	13,348,412	△269,560	△2.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1,384,817	1,384,817	1,384,817	0	0.0%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22,580,454	23,001,576	22,282,832	△718,744	△3.1%
보훈대상맞단체지원	27,205,210	33,262,710	33,156,060	△106,650	△0.3%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900,000	900,000	900,000	0	0.0%
의사상자지원	1,306,950	1,107,000	207,000	△900,000	△81.3%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17,147,738	13,620,280	12,962,163	△658,117	△4.8%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2,668,440	2,379,631	2,139,636	△239,995	△10.1%
종합사회복지관운영	65,176,679	67,051,139	69,112,356	2,061,217	3.1%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198,750	538,750	5,481,400	4,942,650	917.4%
통합사례관리사지원	2,361,135	2,428,575	2,500,875	72,300	3.0%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급여등지원	31,382,566	41,576,552	58,150,065	16,573,513	39.9%
사회복지협의회지원	792,600	783,834	855,799	71,965	9.2%
서북권50+캠퍼스및복지타운조성	0	0	6,992,075	6,992,075	100.0%
청춘카페(친환경전통옥상북카페) 설치(주민참여)	0	0	100,000	100,000	100.0%
어르신맞어린이이용정자시설 재설치(주민참여)	0	0	50,000	50,000	100.0%
복지건강실워크숍	25,000	20,000	20,000	0	0.0%
서울특별시복지상시상	35,100	35,100	35,100	0	0.0%
서울희망「앱」아카데미	46,200	45,000	36,900	△8,100	△18.0%
서울복지재단출연금	12,097,100	13,694,000	15,654,000	1,960,000	14.3%
사회복지위원회운영지원	6,600	10,600	13,600	3,000	28.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지원	720,000	720,000	800,000	80,000	11.1%
저소득층자산형성희망플러스통장	6,934,465	3,303,563	1,232,394	△2,071,169	△62.7%
저소득자녀교육자금적립지원 꿈나래통장	8,204,105	7,327,646	5,067,036	△2,260,610	△30.9%
저소득청년층을위한청년두배통장	0	0	370,000	370,000	100.0%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지원	346,813	342,839	349,267	6,428	1.9%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지원	1,629,356	1,601,656	1,686,545	84,889	5.3%
사회공헌본부운영지원	48,600	70,000	72,113	2,113	3.0%
긴급복지지원사업	10,641,390	11,069,332	19,677,252	8,607,920	77.8%

희망은돌사업활성화	742,400	691,210	667,610	△23,600	△3.4%
착한이웃맺기프로젝트(주민참여)	0	0	163,000	163,000	100.0%
저소득층노후난방시설개선(주민참여)	0	0	20,000	20,000	100.0%
어르신생활시설운영	10,313,475	9,846,080	10,563,841	717,761	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	78,698,178	83,536,308	92,725,302	9,188,994	11.0%
어르신복지시설기능보강	13,429,074	3,914,952	6,692,398	2,777,446	70.9%
어르신복지시설설치지원	7,000,000	6,922,000	7,853,400	931,400	13.5%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어르신지원사업	568,618	721,541	335,104	△386,437	△53.6%
노인종합복지관운영	25,908,681	27,068,480	29,759,576	2,691,096	9.9%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18,886,134	17,964,946	18,766,460	801,514	4.5%
기초연금지급	518,523,156	879,192,934	1,254,519,716	375,326,782	42.7%
경로당활성화및지원강화	12,557,439	12,274,150	10,663,271	△1,610,879	△13.1%
고령자능력활용강화	3,790,023	2,612,093	3,180,540	568,447	21.8%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운영지원	1,693,192	2,036,768	2,115,674	78,906	3.9%
시니어클럽운영지원	1,136,934	951,838	962,158	10,320	1.1%
어르신일자리사업	46,004,885	54,289,082	59,167,627	4,878,545	9.0%
어르신문화체육활성화	950,740	632,340	440,700	△191,640	△30.3%
인생이모작위원회및50+연구소운영	0	0	187,000	187,000	100.0%
베이비부머보람일자리지원	0	0	3,200,000	3,200,000	100.0%
50대가장생활비지원	0	0	300,000	300,000	100.0%
어르신자서전제작지원	0	0	85,000	85,000	100.0%
베이비부머은퇴설계콘서트개최	0	0	200,000	200,000	100.0%
50+재단설립운영	0	0	1,000,000	1,000,000	100.0%

종묘탑골공원주변서비스활성화사업	0	0	200,000	200,000	100.0%
경로당시설개보수(주민참여)	0	0	1,510,000	1,510,000	100.0%
어르신공동작업장설치운영(주민참여)	0	0	300,000	300,000	100.0%
시니어스마트스포츠센터운영(주민참여)	0	0	110,000	110,000	100.0%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5,317,133	13,548,108	15,323,947	1,775,839	13.1%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617,159	683,334	741,560	58,226	8.5%
서울재가관리사운영	4,384,221	4,212,590	3,865,834	△346,756	△8.2%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강화	14,345,072	15,669,534	14,935,967	△733,567	△4.7%
독거어르신공동생활공간조성(주민참여)	0	0	400,000	400,000	100.0%
저소득독거어르신빨래방운영(주민참여)	0	0	350,000	350,000	100.0%
남성독거어르신자립강화프로그램운영(주민참여)	0	0	30,000	30,000	100.0%
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주민참여)	0	0	115,000	115,000	100.0%
독거어르신사회관계형성지원사업(주민참여)	0	0	60,000	60,000	100.0%
시립장사시설위탁운영	21,839,965	22,734,441	22,456,169	△278,272	△1.2%
장사문화개선	65,040	5,040	5,040	0	0.0%
시립장사시설화장로유지보수	3,472,910	3,331,000	2,873,760	△457,240	△13.7%
시립묘지유지관리(5개소)	500,000	500,000	500,000	0	0.0%
용미리제2묘지자연장지조성	400,000	4,000,000	4,000,000	0	0.0%
내곡종합복지관건립사업지원	0	603,000	4,652,834	4,049,834	671.6%
시립묘지노후위험도로안전정비사업	0	0	800,000	800,000	100.0%
망우리묘지공원인문학적길조성	0	0	140,000	140,000	100.0%
서울추모공원내체육시설설치지원	0	0	1,827,630	1,827,630	100.0%
거리노숙인보호	6,073,765	6,152,489	6,454,682	302,193	4.9%

노숙인일자리지원	7,795,146	7,517,053	8,159,326	642,273	8.5%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운영지원)	1,018,080	983,735	1,010,677	26,942	2.7%
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178,880	133,200	133,100	△100	△0.1%
쪽방주민에게꿈과희망을주세요(주 민참여)	0	0	45,000	45,000	100.0%
노숙인자활시설운영	11,995,973	11,865,449	11,443,716	△421,733	△3.6%
노숙인재활시설운영	4,012,858	3,677,330	3,683,503	6,173	0.2%
노숙인요양시설운영	7,447,712	7,396,672	6,679,170	△717,502	△9.7%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	462,084	468,830	499,735	30,905	6.6%
자활근로사업지원	67,662,000	61,814,050	49,806,534	△12,007,516	△19.4%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5,556,743	6,004,919	6,595,425	590,506	9.8%
자활장려금	6,064,711	4,259,000	2,358,400	△1,900,600	△44.6%
희망키움통장 I · II	3,042,390	3,603,000	4,459,856	856,856	23.8%
희망리본사업	7,646,250	7,454,000	3,519,936	△3,934,064	△52.8%

〈참고2〉 전년도 5% 이상 집행잔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5년
 도에 편성한 사업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사업명	2013 예산현액	2013지출액	2013집행잔액	불용률	2015 예산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1,150,805	5,967,993	5,182,812	46.5%	12,962,163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668,440	2,353,595	314,845	11.8%	2,139,636
긴급복지지원사업	10,553,563	7,947,989	2,605,574	24.7%	19,677,25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1,614,356	1,524,105	90,251	5.6%	1,686,545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313,475	9,548,026	765,449	7.4%	10,563,84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어르신지원사업	442,618	11,742	430,876	97.3%	335,104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	3,790,023	3,319,904	470,119	12.4%	3,180,540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670,100	489,066	181,034	27.0%	440,700
장사문화 개선	65,040	3,740	61,300	94.2%	5,040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00,000	454,136	45,864	9.2%	500,000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585,627	437,055	148,572	25.4%	650,465
노숙인 의료지원	4,589,578	4,289,037	300,541	6.5%	4,364,087
거리노숙인 보호	6,514,916	5,986,751	528,165	8.1%	6,454,682
노숙인 일자리지원	7,795,146	7,028,317	766,829	9.8%	8,159,326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78,880	162,299	16,581	9.3%	133,100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3,932,328	3,595,298	337,030	8.6%	3,683,503
자활근로사업 지원	66,387,199	56,506,305	9,880,894	14.9%	49,806,534

〈참고3〉 2015년 신규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개요	2015년 예산	사유
서북권 50+캠 퍼스 및 복지타 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37조 ○ 사업위치 : 마포구 공덕동(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 사업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을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개보수) 	6,992,075	신노년층을 위한 복합기능 수행 시설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타운 건립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두배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 ○ 지원대상 : 18세 이상~34세 이하, 최저생계비 200% 이하 청년층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진원액 지급 	370,000	재무상태가 약화된 청년층을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청년층의 자립기반 제공 및 희망적 목표의식 제고
인생이모작 위원 회 및 50+ 연구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월) ○ 지원대상 : 만51-64세 퇴직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서울시 베이비부머 관련 사업 자문,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보완 사업 및 정책 아이디어 ○ 민간자원 활용 베이비부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7,000	전문적인 고령화 정책 연구 기관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 구현 기반 구축
베이비부머 보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월) ○ 지원대상 : 만51-64세 퇴직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사회공헌형 일자리 800명 지원 	3,200,000	-베이비 부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
50대 가장 생활 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월) ○ 지원대상 :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 지원내용 :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등의 목돈 이자비용 지원 	300,000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 지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1항(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1인당 110만원 범위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이 결합하여자서전 기술 지원 	85,000	-어르신들이 산 경험과 성취를 정리하여 후손과 사회에 남겨둘수 있도록 자서전 제작 지원
베이비부머 은퇴 설계 콘서트 개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14.4월) ○ 지원대상 : 은퇴 전후 청장년 ○ 지원내용 : 은퇴이후 생애재설계, 노후자금 관 	200,000	-은퇴 대비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을 응원

사업명	개요	2015년 예산	사유
	리, 건강관리 등		
50+ 재단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51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50+시니어 관련 신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거시적 측면의 발전방안 제시, 우수사례 확산 전파 - 어르신 정책 연구 기능 총괄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지원대상 : 종묘 탑골공원 이용 어르신 ○ 지원내용 : 이동 거리도서관, 만담대회, 스마트폰 교육,음악동아리 등 문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추진 	200,000	-종묘.탑골공원 주변 환경개선 및 북.문화 프로그램을 시행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시립묘지 노후위험도로 안전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원대상 : 시립묘지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물 ○ 지원내용 : 도로, 측구, 가드레일 및 폐기물처리 등 	800,000	-시립묘지 내 도로보수 및 재포장, 부속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사고예방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원대상 : 망우리묘지공원 ○ 지원내용 : 망우리시립묘지 순환로 5.2km 인문학적 길 조성(안내판 설치,노후석축 및 배수로 정비) 	140,000	-망우리묘지공원 이용시민들에게 심신치유 공간과 낙후지역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인문학적 길 기반 조성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원대상 :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체육공원 부지내) ○ 지원내용 : 주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1,827,630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체육공원 예정부지에 서원마을 외 7개마을 및 내곡지구 주민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설치
2015년 서울 김치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장방침 제96호('14.4.5) 「2014 서울 김치로트페스티벌」 기본계획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나눔행사 및 시민 ○ 지원내용 : 김장나눔행사 및 김장담그기 체험 등 	1,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를 소재로 한 서울의 대표축제로 육성 ○ 소외계층 등 감항나눔행사, 김치담그기 체험, 김치관련 사업 소개 등

〈참고4〉 2015년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1	복지정책과	어르신및어린이이용정자시설,안전등급D등급	성동구	50
2	복지정책과	청춘카페(친환경전통옥상북카페)	중구	100
3	어르신복지과	빨래방확장으로독거노인빨래서비스지원강화	관악구	30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공동작업장설치와운영으로일자리를창출해주세요	광진구	300
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낙상사고~끝!!	금천구	25
6	어르신복지과	함께만들어요~저소득홀몸어르신리브하우스!	도봉구	30
7	어르신복지과	편안하고안전한쉼터를어르신들에게드리고싶어요~	도봉구	400
8	어르신복지과	외로운어르신들을을위한사랑방만들기	동대문구	160
9	어르신복지과	찾아가는우리마을나눔손빨래방	동작구	320
10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미소지음(知音)사업	마포구	60
11	어르신복지과	사각지대독거어르신의안전강화를위한"위험제로!우리어르신의집이달라졌어요"	마포구	60
12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인가?나실당(나경로당가기싫다)인가?-경로당개선사업-	성동구	160
13	어르신복지과	고독사NO!독거어르신공동생활공간마련	성북구	400
14	어르신복지과	저높은경로당은그림의떡?	성북구	300
15	어르신복지과	아름다운노후,이젠경로당에서안전하게~	송파구	300
16	어르신복지과	내집처럼~내가족처럼!노후된어르신사랑방리모델링	양천구	190
17	어르신복지과	9988시니어스마트스포츠센터	용산구	110
18	어르신복지과	나혼자산다!(어르신홀로서기프로젝트)	은평구	30
19	희망복지지원과	너무추워요,저소득층노후난방(연탄,기름)시설개선	광진구	20
20	희망복지지원과	이웃이희망입니다.착한이웃맺기프로젝트	도봉구	163
21	자활지원과	쪽방주민에게꿈과희망을주세요	동대문구	45

Ⅲ. 장애인 및 보건분야 검토의견

1. 어린이 주치의(사업별 설명서 702쪽)

- 동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대상으로 환자 질환, 건강 정보를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에게는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는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단순히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신규편성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1,500,000	1,500,000
연구개발비	-	-	300,000	300,000
연구용역	-	-	300,000	3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1,200,000	1,200,000
진료 및 사업비 지원	-	-	1,200,000	1,200,000

2.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사업별 설명서 803쪽)

- 동 사업은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건강정보를 수집·가공 후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란에서 금연프로그램, 자가건강진단, 운동과 생활, 건강한 식단안내, 나의만성질환관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신규예산 6억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 참조, 홈페이지 구성관련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 1〉

건강실천정보	
금연프로그램	+
자가건강진단	+
운동과생활	-
걷기좋은길	
두바퀴로보는세상	
날씨와건강	
건강한식당안내	
영양과건강	+
임출산육아정보	+
건강증진센터	+
건강백세운동	+
나의만성질환관리	+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 | 건강실천정보 | 운동과생활 | 걷기좋은길

운동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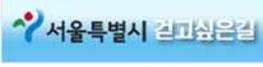
걷기 좋은 길

- 걷기 좋은 길
- 걷기 방법



'걷기 좋은 길이란?'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걷기 좋은 길'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날씬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사업에 활용

서울특별시 걷고 싶은 길



서울시청

- 서울 걷고 싶은 길
- 숲길42, 하천길12, 공원길17, 역사문화길17, 숲속여행길22등 총 110개소 소개

김포 평화누리길



김포시청

- 김포 평화누리길
- 철책따라 걷는 김포 DMZ 트레킹 코스, 대명항~문수산성 등 3개 코스 50km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 2〉

건강실천정보

- 금연프로그램 +
- 자가건강진단 +
- 운동과생활 +

영양과건강 -

- 나의체질량지수
- 식생활과영양**
- 질환별영양관리
- 생애주기별영양관리

- 임출산육아정보 +
- 건강증진센터 +
- 건강백세운동 +
- 나의만성질환관리 +
-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영양과건강

식생활과 영양

식품 구성 자전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영양소



식품구성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6개 식품군의 권장섭취 패턴을 고려하여 면적이 비례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별 설명서 304p)

- 동 사업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나,
- 인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이 도봉구로부터 폐쇄 처분 사전통지됨(2014.11.19.일부)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생기며 원생들을 다른 기관에 이주시킬 비용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확보가 요망됨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명	2015년 편성액
거주시설 인강원	장애인거주 시설운영	1,664,232

4.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사업별 설명서 390쪽)

- 동 사업은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이나,
 -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해피콜지원사업¹⁶⁾ 예산집행현황에서 2013년과 2014년 9월말 집행률이 각각 64%, 55%인 점을 고려할 때<표 참조>,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예산집행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합 계	9,005,944	8,929,975	99	9,870,317	7,640,703	77
차량운행사업	8,828,288	8,788,594	99	9,755,770	7,581,623	77
해피콜지원사업	86,156	54,834	64	58,547	32,661	55
종사자교육사업	84,500	83,707	99	32,000	7,511	23
이용자실시간 만족도조사사업	7,000	2,840	41	12,000	7,650	64
센터운영개선사업	0	0	0	12,000	11,258	94

16) 해피콜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차량 대신 ㈜해피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에서 1,4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콜비 1,000원과 기사지원금 4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별 설명서 416쪽)

- 동 사업은 지역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과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2013년과 2014년 9월말 집행률이 사례관리사업은 68.5%와 19.5%이며, 발달지원사업은 70.7%, 35.0%, 가족지원사업은 71.3%, 33.3%, 홍보사업은 58.4%, 52.3%, 사회서비스사업은 71.7%, 50.1%인 점을 고려할 때<표 참조>, 과다편성으로 보여짐

〈표〉 예산집행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합 계	1,968,355	1,439,895	73.2	2,108,722	1,113,065	52.8
사례관리사업	6,862	4,698	68.5	7,979	1,555	19.5
발달지원사업	17,449	12,337	70.7	14,919	5,225	35.0
통합지원사업	59,057	48,504	82.1	59,555	30,035	50.4
직업지원사업	154,791	152,717	98.6	157,912	107,883	68.3
가족지원사업	15,902	11,332	71.3	14,969	4,981	33.3
홍보사업	138,237	80,791	58.4	96,970	50,674	52.3
지역사회자원 개발관리사업	41,832	41,832	100.0	53,015	24,198	45.6
사회교육사업	80,952	42,699	52.7	67,095	42,511	63.4
정보화교육사업	16,800	16,800	100.0	16,800	11,716	69.7
사회서비스사업	1,175,838	843,553	71.7	1,341,482	671,956	50.1
기타사업	260,635	184,632	70.8	278,026	162,331	58.4

- 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예산 집행현황이 2013년과 2014년 9월말 집행률이 각각 65.1%, 35.7%인 점을 고려할 때<표 참조>, 과다편성 여지가 있음

〈표〉 예산집행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9월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합 계	468,436	370,834	79.1	591,812	300,188	50.7
사회심리재활사업	143,237	120,852	84.4	150,221	85,311	56.8
재가복지사업	37,214	22,902	61.5	27,347	11,746	43
직업재활사업	38,400	34,266	89.2	34,334	14,987	43.7
의료재활사업	41,855	31,367	74.9	25,645	13,600	53
기타사업	78,605	69,283	88.1	173,871	101,115	58.2
정보화교육사업	23,846	23,671	99.3	23,847	16,420	68.9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사업	105,279	68,493	65.1	147,347	52,539	35.7
특화사업	-	-	-	9,200	4,470	48.6

6.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사업별 설명서 441p)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병·의원)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¹⁷⁾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따라 관련근거를 두고 있으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¹⁸⁾와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¹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수익성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서울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1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음.

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아래와 같음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5.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료기관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는 아래와 같음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표 1>, <표 2>, <표 3>과 같음.

- 장애인 이용 의료기관 소재지역에서 SRC 재활병원만 서울외곽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있으며, 다른 4개 의료기관은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음<표1 참조>
- 장애인 이용 의료기관은 서울재활병원외 4곳이며<표1 참조>, 서울시민 이용률이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 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은 70%이상이나 SRC 재활병원은 16%로 매우 낮음<표2 참조>
- 장애인 이용률이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 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은 80%이상이나 SRC 재활병원은 12.9%로 매우 낮음<표3 참조>
-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중 SRC 재활병원은 서울외곽지역에 있으며, 서울시민의 이용률(16%)과 장애인 이용률(12.9%)이 서울재활병원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SRC 재활병원 예산편성액은 서울재활병원보다 더 낮게 편성될 필요가 있음

〈표 1〉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위 치	병상수	직원수 (정원)	운영법인
서울재활병원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110	162 (61)	사복)엔젤스헤이 븐
에스알씨재활병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230	213 (118)	사복)에스알씨
주몽재활의원	강동구 상암로 369	-	16 (17)	사복)주몽재활의원
에스알씨부설의원	관악구 보라매로 44	-	22 (17)	사복)에스알씨
성동재활의원(구립)	성동구 뚝섬로 1길 14	-	7	한양대병원 위탁

〈표 2〉 서울시민 이용률(2013년도)

종류	치료 방법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부설의원		성동재활의원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지역 구분	계	412,133	102,268	100%	261,730	100%	25,151	100%	18,472	100%	4,512	100%	
	서울	소계	160,029	74,575	73%	42,391	16%	20,624	82%	18,102	98%	4,337	96%
		통원	105,470	55,628	54%	6,779	2%	20,624	82%	18,102	98%	4,337	96%
		입원	54,559	18,947	19%	35,612	14%	-	-	-	-	-	-
	타시도	소계	252,104	27,693	27%	219,339	84%	4,527	18%	370	2%	175	4%
		통원	74,595	8,086	8%	61,437	24%	4,527	18%	370	2%	175	4%
		입원	177,509	19,607	19%	157,902	60%	-	-	-	-	-	-

〈표 3〉 장애인 이용률(2014. 1. 1~1.10)

(단위 : 명)

의료 기관명	계	비장애인	장애인
서울재활병원	2,033	390(19.2)	1,643(80.8)
에스알씨재활병원	3,021	2,630(87.1)	391(12.9)
주몽재활의원	140	-	140(100)
에스알씨부설의원	551	51(9.3)	500(90.7)
성동재활의원	102	-	102(100.0)

〈표 4〉 예산안

■ 사회복지사업보조	3,292,571천원
· 에스알씨재활병원	1,713,804천원
- 기본운영비	1,257,702천원
- 복지수당 1,950천원 * 204명	397,800천원
- 운전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28,284천원 * 2명 =	56,568천원
- 처우개선비	1,734천원
· 서울재활병원	924,366천원
- 기본운영비	524,814천원
- 복지수당 1,950천원 * 175명	341,250천원
- 운전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28,284천원 * 2명 =	56,568천원
- 처우개선비	1,734천원
· 주몽재활의원	356,467천원
- 기본운영비	268,915천원
- 복지수당 1,950천원 * 15명	29,250천원
- 운전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28,284천원 * 2명 =	56,568천원
- 처우개선비	1,734천원
· 에스알씨부설의원	297,934천원
- 기본운영비	198,682천원
- 복지수당 1,950천원 * 21명	40,950천원
- 운전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28,284천원 * 2명 =	56,568천원
- 처우개선비	1,734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비 : 구비 = 50 : 50)	199,734천원
· 성동재활의원	199,734천원
- 기본운영비	127,782천원
- 복지수당 1,950천원 * 7명	13,650천원
- 운전원, 안전관리원 인건비 28,284천원 * 2명 =	56,568천원
- 처우개선비	1,734천원

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별 설명서 601p)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의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 어르신치과이동진료실 운영사업²⁰⁾에서 단순발치,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과진료 제공 및 무료틀니는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²¹⁾되어 지역 치과의원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함

〈표〉 예산안

(단위 : 천원)

주요항목	2014년 예산액		
	계	자부담	보조금
어르신치과이동진료실운영	720,055	-	720,055

- 의학연구소운영사업에서 감사결과에 의하면, '11년부터 '13년까지 선정된 서울시 아토피 안심학교 만들기 연구과제 등 96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결산 심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소홀히 하였음

〈표〉 예산안

20)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1)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2013년부터 5만원에서 1만 3천원정도로 부담하고 있고, 틀니는 2012년부터 75세대상으로 145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부담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20만원~25만원 부담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면, 소득과 진료비 지불유형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단위 : 천원)

주요항목	2014년 예산액
의학연구소운영비	1,390,000

- 어르신치과이동진료실 운영사업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항목이고, 의학연구소운영사업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미확보하였기에 감액할 여지가 있음

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운영보조(사업별 설명서 598p)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라매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 건강증진병원 사업내용에서 보라매병원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절주 캠페인, 금연캠페인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표 참조>,
-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란에서 금연프로그램, 자가건강진단, 운동과 생활, 건강한 식단안내, 나의만성질환관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 참조, 홈페이지 구성관련 참조>

〈표〉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대상	사업수행목표
1. 환자 건강증진	1) 환자정보제공 활성화 캠페인	환자	* 설명동영상 교육 건수: 96,000건/년 * EMR 정보처방건수: 6,000건/년
	2) 건강증진정보센터	환자	* 정보센터 이용 건수: 14,400건/년
	3) 환자 금연중재 프로그램	환자	* 환자 금연교육 건수: 300건/년
2.직원 건강증진	4)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직원	* 프로그램 참가 직원 수: 50명 * 건강식 일평균 판매 식수: 120식
	5) 절주 캠페인	직원, 환자, 지역주민	* 캠페인참가자수: 200명
	6) 금연캠페인	직원, 환자, 지역주민	* 캠페인참가자수: 150명
3.병원조 직 및 환경 건강증진	7) ENSH 금연병원 프로젝트	환자, 직원, 지역주민	* 금연병원자가평가 점수: 165/168
	8) 부서 건강증진 활동 지원 및 HPH 경진대회	병원 조직	* 참가부서 수: 20부서
	9) 건강문화프로그램	환자,직원, 지역주민	* 행복한음악회 운영건수: 24회/년 * 웃음강좌 운영건수: 12회/년
	10) 소식지 제작	병원 조직	* 소식지 제작 건수: 2회/년
4.지역사 회 건강증진	11) 지역주민의 건강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 건강식 체험 행사 참여 인원수: 150명
	12) 지역사회 및 서울시 건강증진의 중추 역할 강화	지역사회	* HPH 심포지엄 참가 인원: 200명 * HPH 매뉴얼 제작 건수: 3건/년
	13) 국내·외 타 건강증진병원과의 연대 관계 강화: HPH 네트워킹	지역사회	* 국내외 학회 참석 건수: 2회

〈표〉 예산안

항목	세부 내용	금액(천원)
인건비	연구원 x 2	64,400
일반관리비	환자 정보제공 활성화 캠페인 건강증진정보센터, 환자금연중재, 건강증진캠페인, 직원 건강증진, 금연병원프로젝트, 건강문화프로그램, 부서 건강증진 활동, 건강식체험행 사,HPH 외부 연구 용역	61,500
유인물비		10,000
회의비		3,700
교육비	외부교육+학회 참석	5,400
행사비	HPH 심포지엄	5,000
총 소요 예산		150,000

9.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사업별 설명서 1214p)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북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 건강증진병원 사업내용에서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직원 대사증후군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표 참조>,
-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란에서 금연프로그램, 자가건강진단, 운동과 생활, 건강한 식단안내, 나 의만성질환관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 건강 iN 참조, 홈페이지 구성관련 참조>

<표> 사업내용 및 예산안

11. 건강증진병원 운영

- 지원대상 : 시민 (청소년 ~ 어르신) 등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내용
 -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회비
 - 건강증진병원 주간행사
 -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직원 대사증후군 관리 운영비, 행복한 환자 사진전 운영비 등
 - 건강증진병원 환경조성
 - 성인 및 청소년 대상 결핵 등 감염성 질환 예방 교육 소책자 구입
 - 청소년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 운영
- '15년도 소요예산(안) : 9,020천원